

『日省錄』 別單의 형식 및 분류*

이 규 육**

목차

I. 머리말

II. 『日省錄』 別單의 형식

1. 別單의 문서 형식
2. 別單의 기록 형식

III. 『日省錄』 別單의 분류

1. 抄啓 別單
2. 物目 别單
3. 聞見 别單
4. 節目·事目 别單

IV. 맷음말

<국문초록>

『日省錄』은 正祖 또는 奎章閣의 관원이 군신의 말과 글, 동정 등을 국왕의 시각에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別單은 신하나 각 官司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하나로, 본 문서와 관계있는 내용을 별도의 單子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正祖代 『日省錄』에는 698건의 別單이 기록되어 있어 『正祖實錄』의 139건이나 正祖代 『承政院日記』의 17건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있다.

문서로서의 別單은 본 문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성과 독립성 양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별단은 내용상으로는 본 문서와 종속적인 관계지만, 형식상으로는 본 문서와 독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문서, 또는 본문과 구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別單으로 작성하는 방식 이외에도 後錄하는 방식과 成冊하는 방식이 있다. 後錄이란 문서 중 뒷부분에 본문 내용과는 별도로 기록하는 것, 또는 그 별도로 기록한 내용을 가리킨다. 成冊이

* 이 논문 중 ‘III. 『日省錄』 别單의 분류’는 2014년에 한국고전번역원 역사문화번역실의 일성록팀에서 공동연구 과제로 수행한 「正祖代 『日省錄』 别單의 분류」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이규육(책임연구원), 김옥경(선임연구원), 김일균(전문위원), 필자 등 4명이다. 그리고 별단의 수치를 통계내고 표로 정리하는 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의 강민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 / sojeong11@itkc.or.kr

란 문서의 내용이 많거나 어떤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통합하여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이를 冊子 형식으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別單은 ‘單子의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하였는데, 문서로서의 别單과 單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别單과 單子 모두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과 항목별로 열거하여 기록한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别單은 본 문서에 종속된 문서라는 점과 單子는 일반적으로 내용까지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성록』에 기록된 별단을 글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大字로만 기록된 경우, 小字로만 기록된 경우, 大字와 小자가 섞여서 기록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이들을 다시 각각 본 문서와 별단을 ○로 구분한 경우, 본 문서와 별단을 ○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본 문서는 없이 별단만 기록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외에 별단 중간에 국왕의 傳敎나 명령이 기록된 경우가 있고, 細註에 대해 다시 細註를 기록한 경우가 있다.

정조 재위기간의 『日省錄』에 기록된 别單은 총 698건이 추출되었다. 이처럼 추출된 别單은 抄啓 别單, 物目 别單, 聞見 别單, 節目·事目 别單 4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다.

抄啓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특정 대상을 선발한 뒤 그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314건의 초계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314건은 다시 주제와 내용에 따라 科試 别單 163건, 頒賜 别單 54건, 抄擇 别單 42건, 孝烈 别單 29건, 扶助 别單 12건, 老職 别單 10건, 歲抄 别單 4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物目 别單이란 각 官司나 신하가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사람의 숫자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85건의 물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85건은 物種 别單 79건, 救恤 别單 69건, 獻民 别單 27건, 植木 别單 5건, 擇日 别單 5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聞見 别單은 신하가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24건의 문견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24건은 使行 别單 61건, 御史 别單 37건, 奉審 别單 8건, 所見 别單 9건, 抄出 别單 5건, 問情 别單 2건, 原情 别單 2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節目·事目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節目이나 事目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節目과 事目이란 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75건의 절목·사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75건은 節目 别單 62건, 事目 别單 13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제어 : 别單, 後錄, 成冊, 單子, 抄啓 别單, 物目 别單, 聞見 别單, 節目·事目 别單.

I. 머리말

『日省錄』은 정조 또는 奎章閣의 관원이 군신의 말과 글, 동정 등을 국왕의 시각에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日省錄』은 정조가 세손 시절이던 英祖 36년(1760)부터 기록한 『尊賢閣日記』를 바탕으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純宗 4년(1910)까지 이어진 151년간의 기록으로, 현재 2327책이 전해지고 있다.¹⁾ 『日省錄』의 특징은 기사를 綱과 目으로 편찬하여 일목요연하다는 점, 문서나 대화의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정리하였다는 점, 『承政院日記』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수가 있다.²⁾ 특히 『日省錄』에 다양한 내용의 別單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 점은 『日省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別單은 신하나 각 官司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하나로, 본 문서와 관계있는 내용을 별도의 單子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草記, 啓辭, 啓本, 啓目, 狀啓, 書啓 등의 본 문서 외는 별도로 人名, 物名, 聞見, 節目, 事目 등을 항목별로 열거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別單이다. 柳本藝는 『日省錄』의 내용을 ① 天文類, ② 祭享類, ③ 臨御召見類, ④ 頒賜恩典類, ⑤ 除拜遞解類, ⑥ 疏箚類, ⑦ 啓辭類, ⑧ 草記書啓別單類, ⑨ 狀啓類, ⑩ 科試類, ⑪ 刑獄類 등으로 분류하여, 別單을 草記·書啓와 하나로 묶어 놓았다.³⁾ 이는 『일성록』에 수록된 別單의 비중이 다른 문서에 놓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省錄』에 기록된 문서들은 『承政院日記』에 비해 문서 형식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즉 『承政院日記』에는 草記, 啓辭, 啓目 등을 어느 문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으나, 『日省錄』에는 이들 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啓言’이나 ‘啓曰’로 기록하고 있어 어느 문서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⁴⁾ 반면에 『日省錄』에는 『承政院日記』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를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문서가 別單이다. 정조대에 한정하여 각 史書에 기록된 别單의 분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正祖實錄』에는 别單이 139건, 정조대 『承政院日記』에는 别單이 17건 기록되어 있는데, 『日省錄』에는 698건의 别單이 기록되어 있어 다른 史書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日省錄』에 기록된 别單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류를 통해서 서술하겠지만, 抄啓, 物目, 聞見, 節目, 事目 등 실로 다양한 내용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正祖實錄』에 실린 별단이 주로 聞見, 節目, 事目에 한정된 것과도 비교되는 점이다.⁶⁾

1) 최승희, 「『일성록』 해제」, 『국역 일성록』, 한국고전번역원, 1998, 1~3면 참조.

2) 柳本藝, 『日省錄凡例』 「序」 : 其法每一事, 必立綱係目, 刪繁而取要, 惟絲綸批判, 則全錄, 而諸臣奏啓文字, 無不刪抄, 比諸政院日記, 文省而事詳, 實合於記事者, 必提其要矣。如春官之儀註、道臣之狀啓、還給之上疏、金吾·秋曹之囚供及殺獄案、上言·鳴錚之啓、事大·交隣文字、使行聞見別單, 則政院日記中所不載, 而獨載於日省錄。

3) 柳本藝, 『日省錄凡例』 「目錄」 참조.

4) 草記의 문서 형식과 기록 형식에 대해서는 필자의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335~345쪽 참조. 啓辭의 문서 형식과 기록 형식에 대해서는 필자의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132~139쪽 참조. 啓目의 문서 형식과 기록 형식에 대해서는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24~40쪽 참조.

5) 『正祖實錄』과 정조대 『承政院日記』의 별단은 필자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別單’, ‘節目’, ‘事目’ 등으로 검색하여 하나하나 기사를 확인한 뒤 통계한 수치이다. 정조대 『日省錄』의 별단은 일성록팀의 공동연구로 얻은 수치이며, 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조대 『日省錄』 별단의 수치도 모두 그러하다. 節目과 事目을 别單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III. 『日省錄』 别單의 분류’에서 서술할 것이다.

6) 『正祖實錄』에 실린 총 139건의 별단 중 使臣이나 御史가 올린 聞見 别單이 62건, 節目 别單이 56건, 事目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별단을 『日省錄』에 기록한 것은 法典類에 정해놓은 규정과도 관계가 있을 듯하다. 『續大典』에서는 전국 백성의 숫자와 사면령을 적용할 대상 등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⁷⁾ 『大典通編』에서는 孝烈이 뛰어난 자, 試射의 성적이 우수한 자, 海松을 심은 수량 등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⁸⁾ 『典律通補』에서는 지방에서 封進한 物種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⁹⁾ 『銀臺便攷』에서는 御史의 奉命 결과와 使臣 일행의 聞見 내용 및 恤典을 시행할 백성 등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¹⁰⁾ 고종 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六典條例』에서는 표류해온 외국인에 대한 問情¹¹⁾ 등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法典類의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왕에게 올린 별단의 내용을 국왕의 일기인 『日省錄』을 편찬하면서 옮겨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양의 別單이 『日省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 别單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别單은 문서의 일종으로, 다른 문서들과 함께 『日省錄』에 옮겨 기록되면서 원래의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日省錄』에 기록된 별단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단의 문서 형식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日省錄』에 구현된 별단의 기록 형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别單의 문서 형식과 别單의 기록 형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日省錄』에 기록된 别單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日省錄』에 실린 别單을 抄啓別單, 物目別單, 聞見別單, 節目事目別單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작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别單의 문서적 특징과 기능을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史書와는 차별화된 『日省錄』만의 특징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II. 『日省錄』 别單의 형식

別單은 본 문서와 관계있는 내용을 별도의 單子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别單의 이러한 성격을 종속성과 독립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别單은 본 문서의 존재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다. 반드시 본 문서가 존재해야만 别單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别單의 종속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别單은 본 문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본 문서와는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는 것이 别單이다. 이는 别單의 독립성을 나타내

別單이 16건으로, 사실상 이 세 가지 별단에 한정되어 있다.

- 7) 『續大典』 「戶典 戶籍」 : 每式年, 中外人戶, 别單啓下, 付史官; 『續大典』 「刑典 赦令」 : 每赦令時, 罪人放未放, 京則本曹、義禁府, 外則觀察使分等錄啓。【已至配所、未至配所、未及就囚者, 并爲學論, 而未至配所, 京外時囚徒流案, 俱不見錄, 該司查出別單書入。】
- 8) 『大典通編』 「禮典 嘉慶」 : 孝烈合旌復者, 諸道抄啓, 每式年歲首, 本曹三堂上齊會詳審, 移送政府後, 别單啓稟; 『大典通編』 「兵典 試取 射講」 : 講陣連五次俱通、柳葉箭五巡全布、片箭連三次一巡全布者, 别單書入, 各營射講, 計畫通一年居首者, 歲末別單書啓; 『大典通編』 「工典 栽植」 : 江華府沿邊, 每歲送海松子播種, 竝與種枳數爻別單以聞。
- 9)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 外方封進物種, 報禮曹, 禮曹別單書入。
- 10) 『銀臺便攷』 「吏房攷 御史」 : 御史復命時, 書啓、別單及事目冊、鑰尺、馬牌封, 同爲入啓。…… 京畿暗行御史金銖入來, 而只納書啓, 不呈別單, 各邑弊瘼及孝烈等事, 混錄於書啓中, 原書啓捧入當該御史推考事, 本院啓辭, 傳曰: “允。”【壬戌六月初三日。】; 『銀臺便攷』 「戶房攷 摄要」 : 以漢城府民家頹壓別單, 恤典舉行, 待下敎, 卽爲分付賑恤廳。; 『銀臺便攷』 「禮房攷 使臣」 : 使臣復命時, 回答文及唐報、書狀書啓、首譯聞見別單與入來肅單, 同爲封入。
- 11)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邊政」 : 漂到漢人, 水陸間從願還送, 啓請移咨, 【內地人, 則北京; 外地人, 則盛京。】 從陸而路由京畿, 則接入弘濟院, 遣公事官, 更爲問情。【別單書入。】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별단은 내용상으로는 본 문서와 종속적인 관계지만, 형식상으로는 본 문서와 독립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신하나 각 관사가 문서 형태로 올린 別單은 국왕의裁決을 받은 뒤에 필요한 내용을 『日省錄』 등에 轉載하였다.¹²⁾ 그런데 문서인 别單을 『日省錄』 등에 轉載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형식과는 어느 정도 변형된 형식으로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別單의 문서 형식’과 ‘別單의 기록 형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別單의 문서 형식

別單의 문서 형식이란 別單을 문서로 작성할 때의 형식을 가리킨다. 『經國大典』과 『典律通補』 등의 법전에는 각종 문서의 작성 형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别單의 작성 형식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¹³⁾ 현재 남아있는 문서 중에도 别單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日省錄』과 實錄 등에 轉載된 别單을 통해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문서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别單과 『日省錄』 등에 기록된 别單을 통해 그 작성 형식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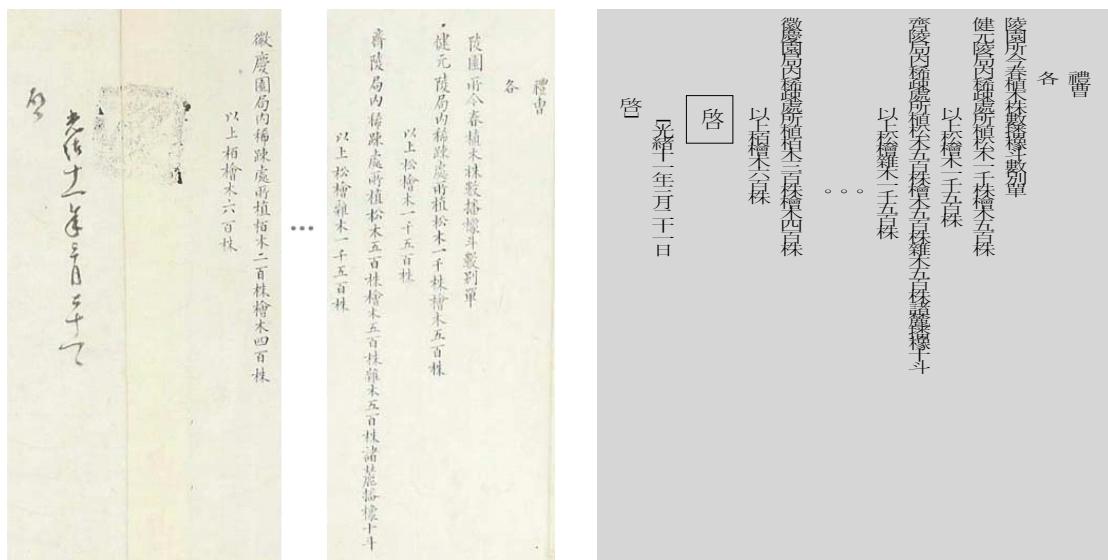


그림-114)

그림-1은 禮曹가 高宗에게 올린 別單으로, 각 陵과 園에 심은 나무의 숫자와 파종한 상수리 씨알의 수량을 각 陵과 園별로 행을 바꾸어 열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别單은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禮曹各陵園所今春植木株數播橡斗數別單’이 别單의 제목으로 序頭에 해당하고, ‘健元陵局內稀疎處所植, 松木一千株、檜木五百株 以上松、檜木一千五百株’부터 ‘徽慶園局內稀疎處所植, 柏木三百株、檜木四百株 以上柏、檜木六百株’까지 각 陵과 園별로 열거된 것이 别單의 본문 내용이다. 별단의 말미에는 啓目 등과는 달리 작성 일자, 작성자와

12) 정조 10년(1886) 이후로는 『일성록』에 수록할 문서에 ‘日省錄’이라는 인장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0 年 2 月 26 日：崑秀曰：“日省錄文書漸益浩繁，而每日各項啓下公事名目多岐，輒有遺漏之慮，臣意則依政院之出朝報例，凡係當入日省錄者，無論狀啓、草記、啓目，以日省錄三字成出小條，本閣抄出時，隨卽印識，以爲憑考之地，似合事宜，而有難擅便，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13) 『經國大典』、「禮典 用文字式」；『典律通補』、「別編 本朝文字式」 참조.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검색일 : 2014년 7월 19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이別單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別單이 3장 더 있다.

결재자의 서명, 官印의 날인 등이 없다.¹⁵⁾ 별단 말미의 여백에는 ‘啓字印’이 찍혀 있고, 高宗이 이 別單에 대해 裁決한 날짜를 ‘光緒 11년(1885, 고종22) 3월 21일’로 기록하고 있다. 맨 마지막의 ‘啓’자는 高宗이 裁決하였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적은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이 날짜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禮曹의 草記가 보인다.

또 예조의 말로 아뢰었다. “각 능과 원에 올봄 나무를 심고 상수리를 파종하는 일을 정식에 따라 거행한 뒤에 그루수와 말수를 구별하여 보고해왔으므로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다만 건릉과 현릉원에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수원부의 유수가 이미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였습니다. 감히 아뢸니다.”¹⁶⁾

위의 草記는 禮曹가 각 陵과 園에 심은 나무의 株數와 파종한 상수리의 斗數를 別單으로 작성하여 들인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림-1의 別單이 이 禮曹의 草記와 함께 올린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위의 草記가 그림-1 别單의 본 문서인 셈이다.

이처럼 별단이 본 문서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었음은 傳敎軸과 『日省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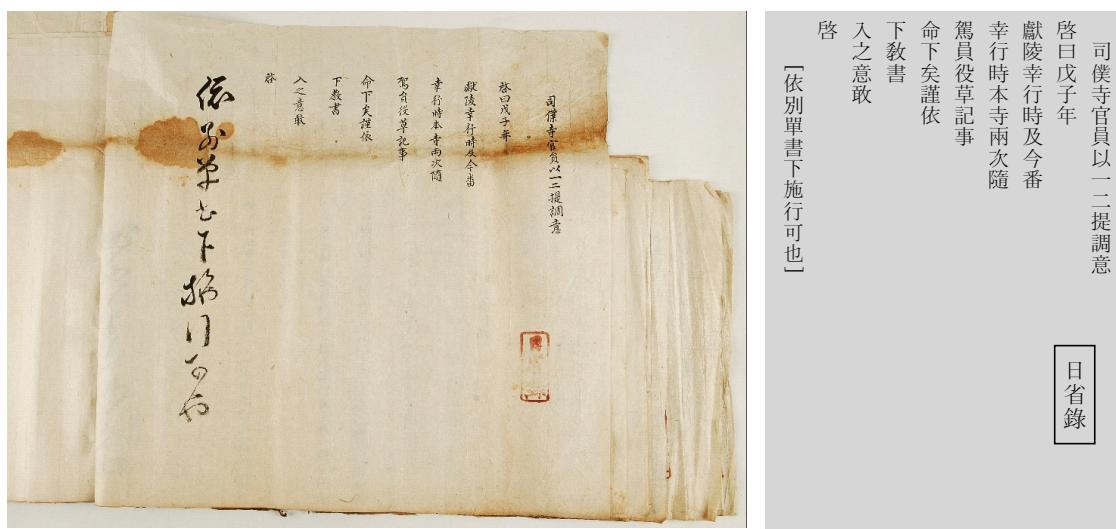


그림-2¹⁷⁾

그림-2는 正祖 23년 8월 22일의 傳敎軸에 편철되어 있는 司僕寺의 草記이다.¹⁸⁾ 그 내용은 정조의 하교에 따라, 무자년(1768, 영조48)에 英祖가 獻陵에 幸行할 때와 이번에 正祖가 獻

15) 제목의 말미에는 年號, 年月日, 제목 작성자의 姓과 署名을 적고 官印을 날인하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啓目式」 참조.

16)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3月 21日 : 又以禮曹言啓曰：“各陵園所，今春植木、播橡，依定式舉行後，株數、斗數，區別報來，故別單書入。而健陵、顯隆園植木，則本府留守已爲區別狀聞矣。敢啓。”

17)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검색일 : 2014년 7월 26일).

18) 傳敎軸은 승정원이 『승정원일기』에 기록할 순서에 맞추어 座目과 文書 등을 편철한 것으로, 하루 단위로 만들어졌다. 柳本藝, 『日省錄凡例』 「序」 : 日記, 則每日院吏, 以繩穿集六房文書, 翌朝草裝之, 謂之傳敎軸, 入直注書, 以大冊不計其事蹟繁漫, 手自全錄, 疏劄則連書於其末, 藏之政院矣。傳敎軸에 대해서는 명경일의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제44호, 2014, 77~115쪽 참조.

陵에 幸行할 때 두 차례 모두 御駕를 수행했던 司僕寺의 員役을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것이다. 司僕寺의 草記에 대해 정조는 ‘別單에 써서 내려준 대로 시행하라.’고 裁決하였다. 이 草記는 같은 날짜의 『日省錄』과 『承政院日記』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日省錄』에는 사복시가 草記와 함께 올린 别單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다.¹⁹⁾ 이 『日省錄』에 기록된 별단에는 御駕를 수행한 司僕寺 員役들의 姓名과 수행할 때의 職名을 열거하였는데, 원래의 별단 내용 이외에도 正祖의 裁決 내용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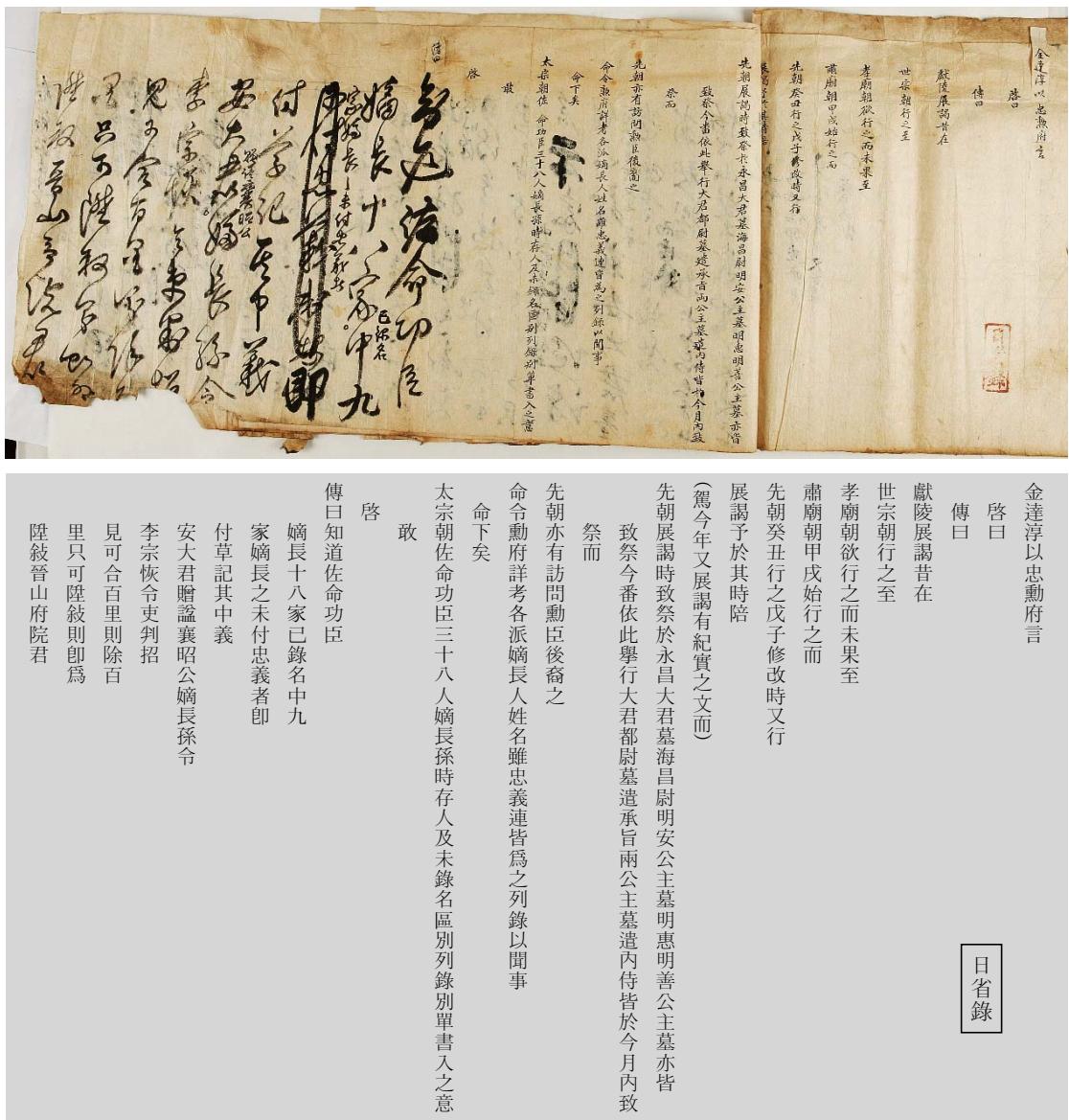


그림-3²⁰⁾

19) 『日省錄』 正祖 23년 8월 22일 : 司僕寺啓言：“戊子年獻陵幸行時及今番幸行時本寺兩次隨駕員役，依下敎書入。”敎以：“依別單書下施行。”○ 司僕寺別單：“馬醫司僕金龜東，戊子以養馬隨駕；李得昌，以巨達隨駕，米布從厚題給。書吏盧鼎暉、金重良，戊子以正差備書吏隨駕，以書吏又爲隨駕，帖加今日成給。輦直崔世昌，戊子以巨達隨駕，米布從厚題給。”별단 중 米布의 지급과 허가의 벌금은 정조의 裁決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 학국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검색일 : 2014년 7월 26일), () 안의 원문은 『일성록』 정조 23년 8월 24일 기사에 의거하여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그림-3은 정조 23년 8월 24일의 傳敎軸에 편철되어 있는 忠勳府의 草記이다. 그 내용은 정조의 명에 따라 太宗朝 佐命功臣 38인의 嫡長孫 중 당시 살아 있는 사람과 아직 錄名이 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것이다. 이 草記도 같은 날짜의 『日省錄』과 『承政院日記』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日省錄』에는 忠勳府가 草記와 함께 올린 别單까지 기록되어 있다.²¹⁾ 이 『日省錄』에 기록된 别單에는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의 명단[時存秩]’과 ‘아직 錄名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명단[未錄名秩]’으로 나누어서 열거하였고, 이 별단에 대해 정조는 佐命功臣 嫡長孫으로서 아직 忠義에 付職되지 못한 자는 付職하고 義安大君의 묘소에는 承旨를 보내 致祭할 것 등을 裁決하였다.

위의 草記와 함께 올린 두 장의 别單은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형식을 알 수는 없지만 본 문서인 草記와는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别單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别單이 본 문서인 草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림-2와 그림-3의 오른쪽 하단에는 각각 ‘日省錄’이라는 사각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는 이 草記들이 『日省錄』에 기록해야 할 문서임을 표시한 것이다.²²⁾ 이에 따라 『日省錄』에는 이들 草記 뿐만 아니라 草記와 함께 올린 别單까지도 같이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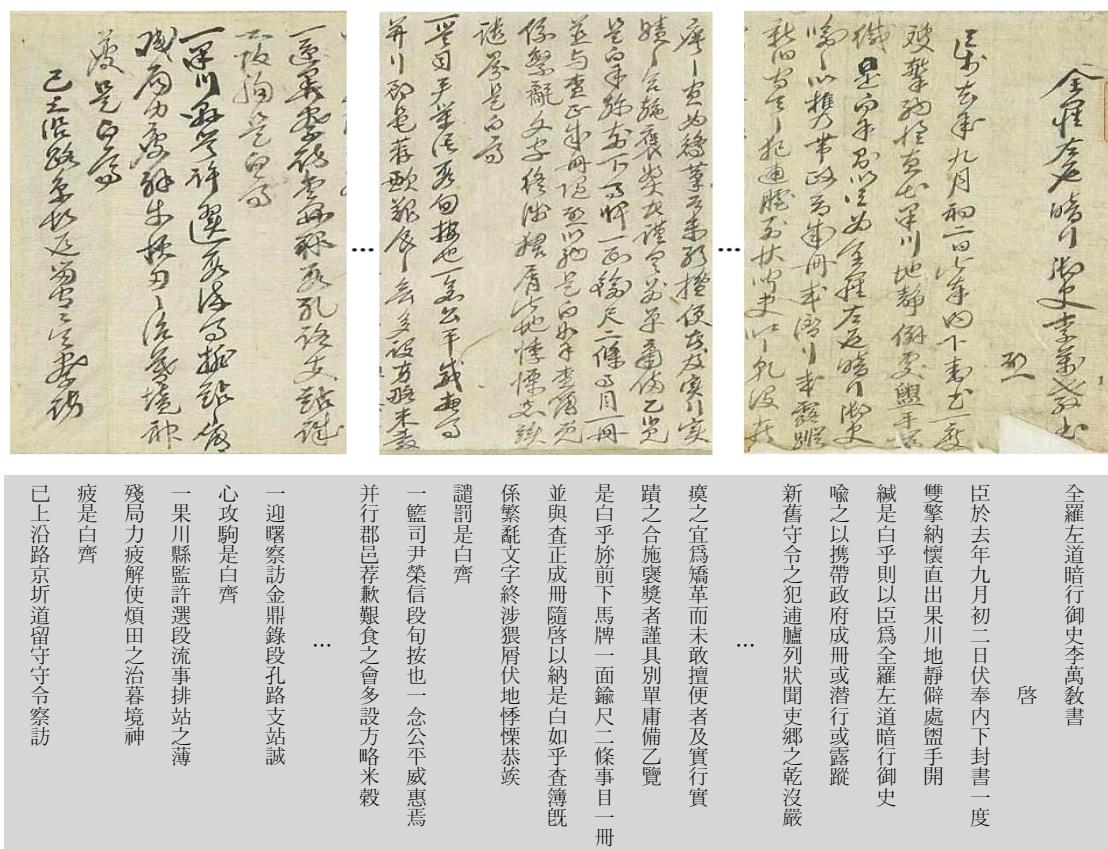


그림-423)

21) 『日省錄』 正祖 23년 8월 24일 : 忠勳府啓言：“依下教太宗朝佐命功臣三十八人嫡長孫時存人及未錄名，區別列錄，別單書入。” ○ “時存秩：晉山府院君河嵩嫡長孫忠義衛河龍彬、漢山府院君趙英茂嫡長孫守衛官趙明漢、鷄林君李來嫡長孫幼學李觀國。……未錄名秩：上黨君李旼、鷺山君辛克禮、完川君淑……” 教以：“佐命功臣嫡長十八家已錄名中九家嫡長之未付忠義者，卽付草記 其中義安大君贈謚襄昭公嫡長孫令李宗恢，令吏判招見，可合百里，則除百里，只可陞敍，則卽爲陞敍。……”

22) 주) 14 참조.

그림-4는 全羅左道 暗行御史 李萬敎가 임무를 마치고서 올린 書啓와 別單의 초본이다. 書啓의 말단 부분에 ‘삼가 별단을 갖추어서 올립니다.[謹具別單]’라는 글이 있고, 이어서 맨 앞의 항목마다 ‘一’ 자로 시작하는 别單이 後錄되어 있다. 이 書啓와 别單은 초본이기 때문에 别單의 정본도 後錄 형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書啓와 별도의 독립적인 문서로 작성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别單과 後錄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别單의 내용과 형식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别單의 내용은 暗行御史 李萬敎가 監司 및 암행 대상 고을의 수령뿐만 아니라 왕래하면서 경유한 고을의 수령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치적을 평가한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别單에 吏讀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평가하는 사람마다 행을 바꾸어 맨 앞에 ‘一’ 자로 시작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别單을 작성할 때 항목별로 ‘一’ 자를 사용하였음은 『日省錄凡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日省錄凡例』는 柳本藝가 『日省錄』을 편찬하는 규정에 대해 정리해놓은 책으로, 이 책에서는 書狀官과 首譯의 聞見別單을 『日省錄』에 기록할 때 ‘一’ 자를 써서 열거하도록 하였다.²⁴⁾ 이는 聞見別單의 실제 작성 형식에 따라 그렇게 기록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别單을 작성할 때 항목별로 맨 앞에 ‘一’ 자를 써서 열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뒤의 ‘『日省錄』 别單의 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외에 별단은 접어서 帖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림-1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남아있는 别單의 경우에도 帖으로 되어 있다.

문서로 남아있는 别單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서 형식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이상을 바탕으로 별단의 문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문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독립적인 문서이다. 둘째, 항목별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되, 항목별로 맨 앞의 시작하는 부분에 ‘一’ 자를 쓰기도 한다. 셋째, 吏讀를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일반적인 문서와 달리 문서 말미에 작성 일자, 작성자와 결재자의 서명, 官印의 날인 등이 없다. 다섯째, 접어서 帖을 만든다.

본 문서, 또는 본문과 구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别單으로 작성하는 방식이외에도 後錄하는 방식과 成冊하는 방식이 있다.史料에는 後錄하거나 成冊한 형식의 别單도 출현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들과 别單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後錄이란 문서 중 뒷부분에 본문 내용과는 별도로 기록하는 것, 또는 그 별도로 기록한 내용을 가리킨다. 문서의 내용 중에 본문과 구별하여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後錄 형식을 취하였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서는 啓目, 狀啓, 單子 등에 後錄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데, 後錄은 본문을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 ‘後’ 자를 쓰고 항목별로 맨 앞에 ‘一’ 자를 써서 열거하였다.²⁶⁾ 조선 후기에는 草記, 啓辭, 啓本, 啓目, 狀啓, 書啓 등에 後錄하였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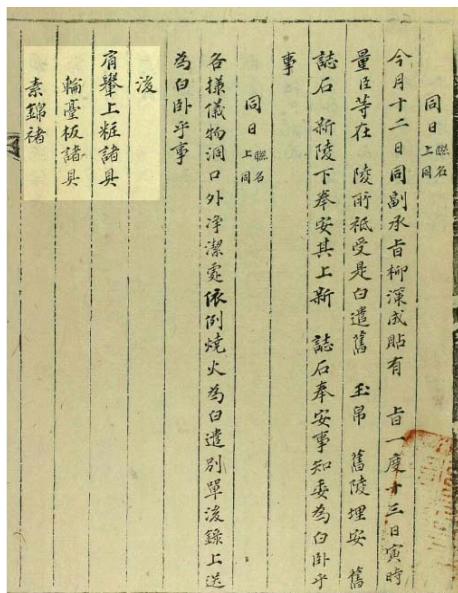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검색일 : 2014년 7월 26일)

24) 柳本藝, 『日省錄凡例』 「臨御召見類」 : 書狀官某、首譯某進聞見別單【書狀官入來啓下日抄上】 ○ 書狀官別單：“一, 云云 一, 云云。” ○ 首譯別單：“一, 云云。”

25) 『日省錄』 正祖 17年 6月 25日 : 至於書啓之外面着銜、別單之不爲摺貼，無非失格，事體未安 請當該御史從重推考。

26) 『太宗實錄』 15年 11月 21日(甲寅) : 甲午年受敎, 大小各品人員及有職兩班子孫與有無職僧人、庶人、公私賤口, 公文成給, 奴婢之數更定其數, 啓目後錄, 乞依曾降敎旨規式, 公文成給。; 『世宗實錄』 27年 7月 15日(丁亥) : 議政府據禮曹呈啓：“樂學工人救弊條件, 磨勘後錄。”; 『文宗實錄』 1年 1月 8日(戊申) : 咸吉道都節制使李澄玉馳啓：“今聲息最繁, 故防禦條件, 磨勘後錄。”; 『世祖實錄』 2年 6月 4日(壬寅) : 吏曹啓：“今捧傳旨, 東西班牙檢職除授節次, 啓目後錄。”; 『成宗實錄』 7年(1476) 10月 26日(丙申) : 承文院提調啓：“兼官獎勸, 當依『大典』施行。其未盡條件單子後錄。”

보여주는 사례들이 보인다.²⁷⁾ 그림-4는 別單의 초본이기는 하지만 别單을 독립적인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書啓의 뒷부분에 後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 외에 儀軌를 통해서도 别單을 後錄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그림-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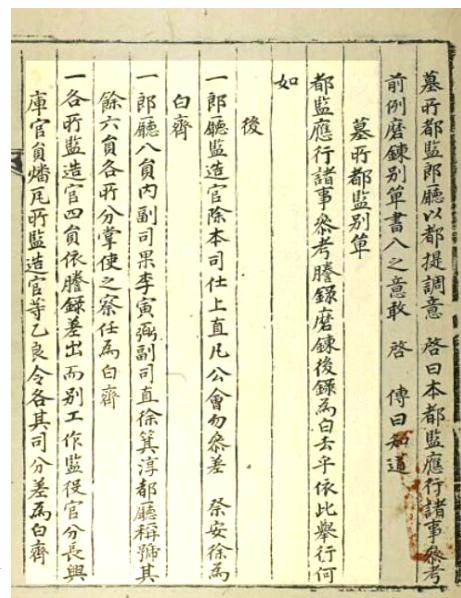


그림-6(29)▶

그림-5와 그림-6은 모두 儀軌에 기록된 别單으로, 모두 别單을 後錄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後’ 이하의 열거된 항목들이 後錄한 别單인 것이다. 이외에 『日省錄』 등에도 별단을 후록한 기록들이 보인다.³⁰⁾

앞에서는 後錄을 别單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後錄을 别單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銀臺便攷』 「吏房攷 御史」에는 御史가 復命할 때 書啓와 함께 别單을 바치도록 하였고, 京畿 暗行御史 金銖이 復命할 때 書啓만 바치고 别單은 바치지 않았다가 推考를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³¹⁾ 이는 别單이 書啓와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본 문서와는 별

27) 『承政院日記』 仁祖 19年 5月 5日 : 李省身, 以春秋館郎廳以領監事諸堂上意啓曰：“莫重史記, 不可以時事之艱, 延拖淹滯, 依前判下, 事目參商磨鍊, 後錄以啓, 令各司舉行, 宜當。”; 『承政院日記』 肅宗 30年 5月 30日 : 臣取考該院啓辭, 則其後錄啓下仍存者爲十口。; 『承政院日記』 顯宗 3年 7月 12日 : 今見全南監司啓本後錄, 以未放、稟、放, 分三等開錄; 『承政院日記』 仁祖 23年 2月 29日 : 今此運米時應行節目, 具載於本司啓目後錄。;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7月 2日 : 狀啓後錄, 紙入甚夥, 爲弊多端, 害歸於民。; 『日省錄』 憲宗 3年 12月 11日 : 宣傳官吳益善書啓以爲：“……寒苦最切姓名, 幷以後錄于左。”

28) 『健陵遷奉都監儀軌』 1책 113면 : “各樣儀物, 洞口外淨潔處, 依例燒火爲白遣, 别單後錄上送爲白臥乎事。後 : ‘肩輿上粧諸具、輪臺板諸具、素錦褚。’”

29) 『延慶墓所都監儀軌』 1책 27면 : 墓所都監別單 : “都監應行諸事, 參考謄錄磨鍊, 後錄爲白去乎, 依此舉行何如? 後 : ‘一, 郎廳監造官, 除本司仕上直, 凡公會勿參, 差祭安徐爲白齊 一, 郎廳八員內, 副司果李寅弼、副司直徐箕淳, 都廳稱號, 其餘六員, 各所分掌, 使之察任爲白齊。’”

30) 『日省錄』 正祖 18年 1月 19일 : 狀啓以爲 : “因下敎, 本營左司後哨軍與入防軍, 臣於本月十六日, 進詣講武堂, 砲射試取後, 入格人姓名、矢數, 後錄別單。” ○ 柳葉箭秩 : 後哨哨軍姜時興等二名, 貫一中、邊一中, 崔致大, 邊二中, 竝直赴會試, 張漸哲等二名, 貫一中, 皮聖直等二十一名, 邊一中, 各米二斗賜給。砲放秩 : 後哨哨軍徐成, 一貫一中, 金成哲等二名, 邊一中, 各米二斗賜給。;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3月 11일 : 向於本道武藝試取事狀聞時, 後錄別單, 皆有歸屬, 而其中亦有見漏於施賞者。

31) 御史는 왕명을 수행하고 나서 復命할 때 書啓와 别單을 바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銀臺便攷』 「吏房攷 御史」 : 御史復命時, 書啓、別單及事目冊、鎰尺、馬牌封, 同爲入啓。…… 京畿暗行御史金銖入來, 而只納書啓, 不呈別單, 各邑弊瘼及孝烈等事, 混錄於書啓中, 原書啓捧入當該御史推考事, 本院啓辭, 傳曰 : “允。”【壬戌六月初三日。】;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 御史復命時, 書啓、別單及事目冊、鎰尺、馬牌, 同爲入啓。

도의 문서로 작성하는 別單과 본 문서 안에 별도로 기록하는 後錄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日省錄』에는 監司의 狀啓와 後錄이 다수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宣傳官의 書啓와 後錄 및 御史의 書啓와 別單도 다수 실려 있다. 그런데도 위에서처럼 後錄과 別單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別單과 後錄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문과 별도로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別單이나 後錄이 동일하므로 後錄도 别單의 일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는 别單을 작성하는 자가 别單과 後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간에 别單을 後錄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别單과 後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後錄은 본 문서의 뒷부분에 본문과는 별도로 구별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고, 别單은 본 문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독립적인 문서를 가리킨다.³²⁾ 따라서 後錄과 别單은 본 문서, 또는 본문과 구별하여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본 문서의 안에 함께 기록하느냐 본 문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문서로 기록하느냐의 차이가 있겠다. 다만 别單은 본 문서와 구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别單은 後錄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後錄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모두 别單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别單 중 일부는 後錄 형식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 이러한 别單은 개념상의 혼란에 의한 것이거나 기록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别單과 成冊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成冊이란 문서의 내용이 많거나 어떤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통합하여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이를 冊子 형식으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우선 成冊 형식으로 작성된 别單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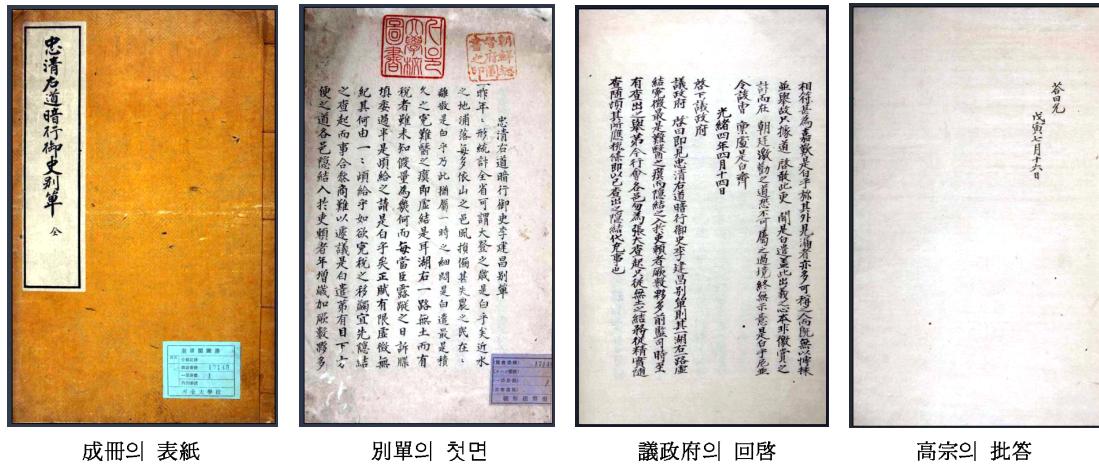


그림-733)

그림-7은 高宗 15년(1878)에 忠淸右道 暗行御史 李建昌이 書啓와 함께 올린 别單으로, 李建昌의 别單 이외에도 그 别單에 대한 議政府의 回啓와 議政府의 回啓에 대한 高宗의 批答 까지 함께 실려 있는 成冊 형식이다. 李建昌이 暗行御史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復命할 때

32) 이러한 차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别單에도 後錄을 한다는 점이다. 『日省錄』 正祖 17年 10月 23 日 : 别單以爲：“……謹依傳令內辭意，以筦千庫所在者上下，而定界步數，後錄以聞。”

3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검색일 : 2014년 8월 2일).

書啓와 別單을 올린 시기는 高宗 15년 4월 14일이고, 그 别單에 대해 議政府가 回啓하고 高宗이 批答을 내린 시기는 같은 해 7월 19일이다.³⁴⁾ 따라서 이 成冊은 議政府의 回啓에 대해 高宗이 비답을 내리고 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成冊 형식으로 남아있는 别單은 대부분 문서를 올리는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국왕의 裁決을 받고 난 뒤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남아있는 成冊 형식의 별단은 국왕의 裁決을 받고 나서 다른 문서와 함께 묶여 있다는 점 외에 『日省錄』에 成冊으로 보고한 别單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³⁵⁾ 『日省錄』 등에서 别單과 成冊을 각각 별개의 문서와 冊子로 언급한다는 점,³⁶⁾ 하급 기관에서 成冊으로 보고해온 것을 상급 기관이 다시 别單으로 작성해서 들인다는 점³⁷⁾ 등으로 볼 때 别單을 국왕에게 올리는 단계에서는 成冊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別單은 본 문서와 관계있는 내용을 별도의 單子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라고 정의한 바 있다. 别單이 ‘單子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한다면 别單과 單子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單子는 别單과 달리 『典律通補』에 下直單子, 謝恩單子, 參謁六行單子, 六行單子, 問安單子, 祇受單子, 守令薦單子 등 7가지의 문서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³⁸⁾ 이 외에도 史料에서는 望單子, 署經單子, 歲抄單子 등 다양한 단자들이 보인다. 이러한 單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單子를 올리는 목적에 따라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單子를 작성하는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單子를 작성하되, 職名, 姓名, 物名 등 可變的인 내용만 바꾸어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³⁹⁾ 그리고 單子는 别單과 달리 본 문서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문서이다. 單子의 말미에는 단자의 종류에 따라 작성 일자, 작성자의 성명이나 서명, 官印의 날인 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⁴⁰⁾ 單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항목별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别單과 유사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상을 바탕으로 문서로서 别單과 單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别單과 單子 모두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지만, 别單은 單子와 달리 본 문서에 종속된 문서라는 점이 다르다. 둘째, 别單이나 單子 모두 항목별로 열거하여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유

34) 이러한 사실은 『日省錄』 高宗 15년 4월 14일에 李建昌의 書啓와 别單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해 7월 19일에 議政府의 回啓과 高宗의 批答이 실려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成冊의 맨 끝장에는 ‘戊寅七月十六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日省錄』의 기록보다 3일이 빠르게 되어 있다.

35) ‘『일성록』 별단의 분류’에서 살펴보겠지만, 正祖代 『日省錄』에서는 成冊 형식의 별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6) 『日省錄』 正祖 15年 10月 28日 : 祭享及守護之節, 依筵敎詳問古例及見行之例, 各修別單及成冊, 還朝日入侍以奏; 『日省錄』 正祖 19年 3月 8日 : 假承旨金啓洛狀啓以爲 : “……各項圖形及別單、成冊, 已悉於臣父啓聞中, 不敢更爲煩陳。” ○ 咸鏡監司金華鎮狀啓以爲 : “臣於巡審之行路逢臣子假承旨金啓洛, 得伏聞筵敎, 除又禮曹關文來到。……各項圖形、舉行條件, 或載冊子或具別單, 畏夜上送。”; 『日省錄』 正祖 19年 7月 6日 : [강] 命京畿道臣, 每月終, 以華城撥站形止, 開錄成冊, 具別單以聞。[목] 教曰 : “……每月終, 監司以其各站形止, 開錄成冊, 具別單以聞事, 令廟堂分付畿伯及華留處。”; 『日省錄』 純祖 13年 6月 3日 : 設賑邑守令治績, 並與民人願納別單及成冊所載, 請令該曹稟處。

37) 『日省錄』 正祖 9年 4月 12日 : 自本道家舍則撤毀, 財產則修成冊報來, 故別單書入。; 『日省錄』 正祖 14年 6月 27日 : 朝官年七十以上, 士庶人年八十以上, 自各部修成冊, 今才報來, 而內侍府成冊, 亦爲來到, 故一體別單書入。; 『承政院日記』 英祖 21年 9月 20日 : 各該營將射放試取後, 修成冊報來, 故得中校卒, 自本廳別單書入之意, 敢啓。

38)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참조.

39) 모든 單子의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無啓目單子의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다. 無啓目單子에 대해서는 명경일의 「조선시대 啓日 연구」, 1~70쪽 참조.

40) 『典律通補』에 실린 7개의 단자 중 六行單子, 參謁六行單子, 祇受單子, 守令薦單子의 말미에는 작성 일자, 작성자의 성명이나 서명, 官印의 날인이 있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참조.

사하지만, 單子는 別單과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까지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别單의 말미에는 작성 일자, 작성자와 결재자의 서명, 官印 등이 없으나, 單子의 말미에는 단자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2. 别單의 기록 형식

신하나 각 官司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는 모두 承政院을 거쳐서 入啓되었고, 국왕의 裁決을 거친 문서는 해당 문서를 올린 신하 및 각 官司로 보내거나 承政院에 보관하였다.⁴¹⁾ 承政院이 국왕의 裁決을 거친 문서를 신하 및 각 官司로 보내주더라도 『승정원일기』에 기록하기 위해서 사본을 별도로 작성해서 남겨두었다가 傳敎軸을 만들었다.⁴²⁾ 그중 『日省錄』에 기록할 문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日省錄’이라는 사각 인장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지 않는 문서인 별단은 傳敎軸에도 編綴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문서 형태의 별단을 그대로 규장각에 보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문서로서의 别單을 『日省錄』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는 원래의 형식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는 문서로서의 别單이 『日省錄』에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日省錄』에 기록된 别單은 우선 글자의 크기가 다양하다. 别單 전체가 大字로만 기록된 형식, 别單 전체가 小字로만 기록된 형식, 大字와 小字를 섞어서 기록한 형식이 있다. 그리고 본 문서와 别單을 ○로 구분한 형식과 ○로 구분하지 않은 형식이 있고, 아예 본 문서의 내용은 없고 별단만 기록된 형식도 있다.

먼저 别單을 大字로만 기록한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8, 그림-9, 그림-10은 모두 别單을 大字로만 기록한 경우이다. 그중 그림-8은 본 문서인 江村慰諭御史 金啓洛의 書啓와 别單을 ○로 구분하였고, 그림-9는 본 문서인 成均館의 草記와 别單을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기록하였다.⁴⁴⁾ 그림-10은 본 문서에 대한 기록은 없고 别單만 기록하였다.

41) 승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서의 수발과 국왕의 裁決에 대해서는 필자의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335~345면과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151~157면, 明經일의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1~64면 참조.

42) 明經일의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103면 참조.

43) 군신의 대화는 입시한 注書가 3일 안에 작성해서 『승정원일기』를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성록』에도 기록할 수 있도록 3일 안에 규장각으로 보내주었다. 이러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정조 5년(1781)과 15년(1791) 두 차례에 걸쳐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의 기록 중에는 주서가 篷席에서 물러나와 즉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정식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별단을 비롯하여 『일성록』에 기록할 문서도 3일 이내에는 규장각으로 보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 篷說, 三日内修正入啓。; 『銀臺便攷』 「通攷 注書」 : 辛亥六月初七日, 篷說, 毋得過三日修納。; 『政院故事』 「兵攷 賓對朝參」 : 次對篷說, 限三日修納, 而過限, 該房察推事, 承旨擧條蒙允。【辛丑七月十七日。】;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5月 1日 : 日省錄編入篷說, 入侍史官三日内修送本閣, 自是定式。; 『承政院日記』 正祖 20年 3月 16日 : 日省錄所載篷說, 入侍注書, 每於篷退之後, 卽爲修送本閣, 自是定式。; 『內閣日曆』 正祖 22年 1月 13日 : 此後陵園幸行回鑾後, 隨駕注書修正篷說啓下後, 送于內閣, 閣臣與注書眼同修入日省錄事, 書揭政院、內閣事, 下教。

44) 『일성록』의 기사 중간에 표시된 ○는 『승정원일기』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의 기사와 뒤의 기사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이강우, 「『承政院日記』의 記事分合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19~24면 참조.

鳳起三嘉彌重采晉州李尤璫蔚山朴文玉放送
事今日內分付

事今日內分付

中都元戶三十九百五十九戶人口男女并二萬四
千六百六十二口男一萬一千五百六十口女
一萬三千九十六口東郭元戶六千八百十九戶
人口男女并二萬八千三百二十一口男一萬三
千九百六十二口女一萬四千三百六十一口西郭
元戶一萬三千六百三戶人口男女并七萬五千
六百七十三口男三萬六千五百十四口女三萬

그림-845)

그림-946)

그림-1047)

다음으로 別單을 小字로만 기록한 형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11, 그림-12, 그림-13은 모두 别單을 小字로만 기록한 경우이다. 그중 그림-11은 본 문서인 文禧廟營建廳의 草記와 别單을 ○로 구분하였고, 그림-12는 본 문서인 漢城府의 草記와 别單을 ○로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기록하였다. 그림-13은 본 문서에 대한 기록은 없고 别單만 기록하였다.

存廩以下入廟後名鑿更為稟吉又啓言入廟後
守備以下之人事數考前例筆者入○入廟
前下人名數別算守備一名書前人志義廟庫
直二名房庫直二名次如中使房直一名照
名軍士二名次如中使房直二名入
成化五年正月
廟後下人名數別算守備四人內官房直二名軍
士二名大門軍士二名典史廳
軍士一名祭器庫軍士二名典史廳
名見校正郎廳李和永于誠正閱

今各部官拿廉吏觀勤慢據傳旨
漢城府居言過據莫矣草記批旨各部官負為先
拿廉更令誠心搜訪限以三十日過限沒據傳旨
事命下矣係下教招教各御官負另加嚴飭而各
部成冊今繞齊到並與夏等舉行者報來故別單
書人五
一師未題二十八人內男二十一人女八人滿三
十人女一百九十一人教曰拿廉事史觀前頭
李四月
勤慢據傳旨

그림-1148)

그림-1249)

그림-1350)

다음으로 大字와 小字를 섞어서 別單을 기록한 형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14, 그림-15, 그림-16은 大字와 小字를 섞어서 别單을 기록한 경우이다. 그중 그림-14는 본 문서인 墓所都監의 草記와 别單을 ○로 구분하였고, 그림-15는 본 문서인 長生殿의 草記와 别單을 ○로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기록하였다. 그림-16은 본 문서에 대한 기록은 없고 别單

- 45) 『日省錄』 正祖 10年 4月 8日.
 46) 『日省錄』 正祖 12年 1月 2日.
 47) 『日省錄』 正祖 6年 12月 30日.
 48) 『日省錄』 正祖 12年 5月 12日.
 49) 『日省錄』 正祖 16年 4月 22日.
 50) 『日省錄』 正祖 12年 4月 6日

만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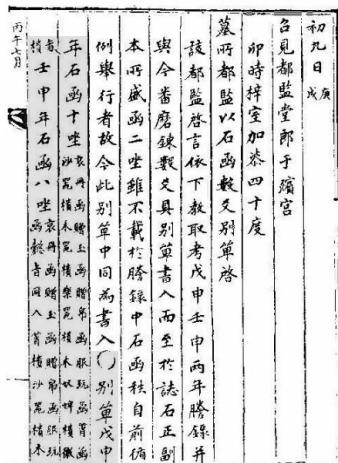


그림-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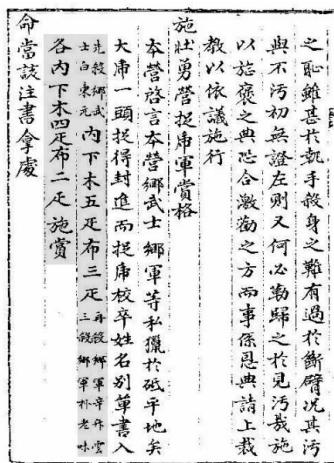


그림-1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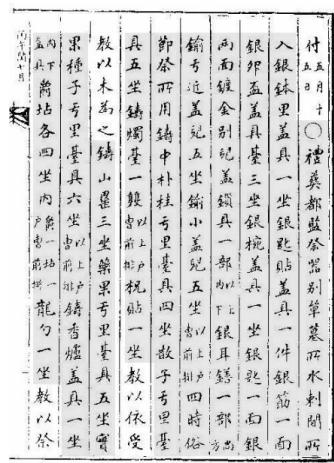


그림-1653)

기타 특수한 형식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17은 別單 중간에 正祖의 傳敎임을 나타내는 ‘敎以’가 기록된 형식이고, 그림-18은 別單 중간에 正祖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命’이 기록된 형식이다. 『日省錄』에 기록되는 문서는 국왕의 裁決을 거친 뒤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17과 그림-18처럼 別單 중간에 국왕의 裁決 내용까지 함께 기록하는 경우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別單 중간에 ‘敎以’나 ‘命’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别單 중에는 국왕의 裁決 내용이나 裁決 내용대로 시행한 사항까지 함께 기록된 경우도 종종 보인다.⁵⁴⁾ 그림-19는 别單의 小字에 대한 註釋이 더 작은 小字로 기록된 형식이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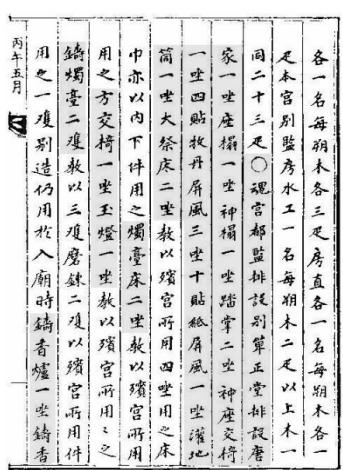


그림-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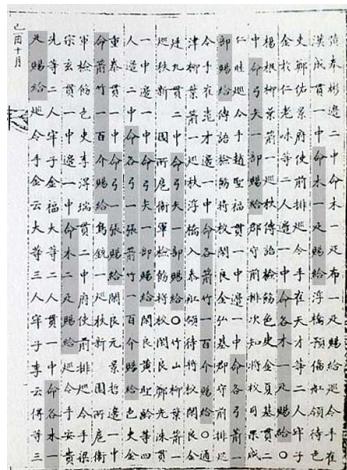


그림-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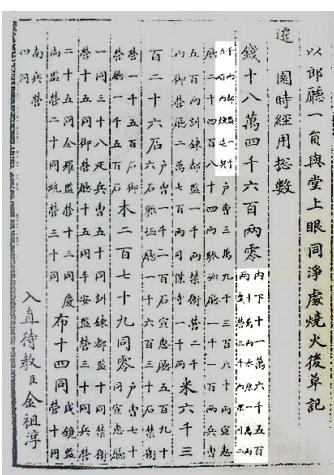


그림-1958)

51) 『日省錄』 正祖 10年 7月 9日.

52) 『日省錄』 正祖 18年 10月 15일.

53) 『日省錄』 正祖 10年 閏7月 4일.

54) 이러한 별단은 특히抄啓 別單 중 科試에 入格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기록한 별단에 국왕의 裁決에 따라 그들에게 시상한 내역까지 함께 기록한 경우에서 많이 보인다.

55) ‘錢十八萬四千六百兩零’에 대한 細註 중 ‘內下十一萬六千五百兩’에 대해 다시 ‘十萬兩水原, 一萬兩畿營, 三千兩果川, 二千兩都監, 一千五百兩燒造契’라고 細註를 달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성록』에 기록된 별단을 글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大字로만 기록한 경우, 小字로만 기록한 경우, 大字와 小字를 섞어서 기록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이들을 다시 각각 본 문서와 별단을 ○로 구분한 경우, 본 문서와 별단을 ○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본문은 없이 별단만 기록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외에 별단 중간에 정조의 傳敎나 명령이 기록된 경우도 있고, 細註에 대해 다시 細註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III. 『日省錄』 別單의 분류

정조 즉위년(1766) 3월 10일부터 24년(1800) 7월 4일까지 정조 재위기간의 『日省錄』에 기록된 別單은 총 698건이 추출되었다.⁵⁶⁾ 이처럼 추출된 别單을 먼저 抄啓 别單, 物目 别單, 聞見 别單, 節目·事目 别單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대분류라고 하였다. 抄啓 别單은 人名을 중심으로 열거한 것이고, 物目 别單은 物名을 중심으로 열거한 것이며, 聞見 别單은 聞見 사안을 중심으로 열거한 것이고, 節目·事目 别單은 節目이나 事目을 열거한 것이다. 正祖代 『日省錄』에 기록된 총 698건의 别單 중 抄啓 别單이 314건, 物目 别單이 185건, 聞見 别單이 124건, 節目·事目 别單이 75건이었다. 이 4가지의 대분류 안에서 다시 주제와 내용에 따라 각각 몇 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를 소분류라고 하였다. 대분류의 별단 수치를 각각 정조 재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1> 별단의 대분류

在位年度	抄啓別單	物目別單	聞見別單	節目事目別單	合計
即位年		1	2		3
1年					0
2年		1			1
3年		1			1
4年		1	3		4
5年		1	2		3
6年		1			1
7年		1			1
8年		2	1		3
9年		1			1
10年	11	64	29	16	120
11年	2	1	11	2	16
12年	39	26	2	6	73
13年	53	16	4	5	78

56) 『日省錄』 正祖 10年 5月 18日.

57) 『日省錄』 正祖 13年 10月 27日.

58) 『日省錄』 正祖 13年 10月 8日.

59) 정조대 『일성록』의 별단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别單이면서도 ‘別單’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원문만으로는 별단을 모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문도 역자에 따라서 별단을 밝힌 경우가 있고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역문만으로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원문 확인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중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14年	20	5	11	8	44
15年		2	1		3
16年	17	11	4	8	40
17年	30	26	11	18	85
18年	34	4	15	5	58
19年	65	8	13	2	88
20年		2			2
21年		2			2
22年		1			1
23年	20	2	10	2	34
24年	23	5	5	3	36
合計	314	185	124	75	698

1. 抄啓 別單

抄啓 別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특정 대상을 선발한 뒤 그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法典에는 經筵官, 知製敎, 廉謹吏, 抄啓文臣, 專經文臣, 漢學文臣, 專經武臣, 宗廟配享功臣 등을 抄啓하도록 한 규정이 보인다.⁶⁰⁾ 그러나 『일성록』에는 科試에서 入格한 사람들의 명단, 나라에서 恩典이나 물품 등을 하사해준 사람들의 명단, 어떠한 사안과 관련되어 선발한 사람들의 명단, 孝誠이나 節義 등이 뛰어난 사람들의 명단, 나라에서 물품 등을 내려주어 扶助한 사람들의 명단, 老職으로 加資할 사람들의 명단, 죄를 지어 처벌 받은 전직 관원들의 명단 등을抄啓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314건의 초계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314건을 다시 주제와 내용에 따라 科試, 頒賜, 抄擇, 孝烈, 扶助, 老職, 歲抄 등 7가지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초계 별단의 수치를 소분류 및 정조 재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2> 抄啓 別單

在位年度	科試	頒賜	抄擇	孝烈	扶助	老職	歲抄	合計
即位年								0
1年								0
2年								0
3年								0
4年								0
5年								0
6年								0
7年								0
8年								0

60) 『續大典』 「吏典 京官職」 : 經筵特進官, 以文蔭武二品以上抄啓。; 『大典通編』 「吏典 京官職 弘文館」 : 知製敎, 副提學以下所帶, 稱內知製敎, 大提學與吏曹判書相議, 以六品以上別爲抄啓者, 稱外知製敎。; 『大典通編』 「吏典 薦舉」 : 廉謹吏, 令二品以上各學所知, 書送廟堂, 廟堂會議抄啓。; 『大典通編』 「禮典 嘉勸」 : 專經文臣, 令本曹抄啓。……○ 製述文臣, 令本曹抄啓。……○ 奎章閣抄啓文臣, 以參上、參外中槐院分館人, 自政府限三十七歲以下抄啓, 而年滿四十, 則減下。; 『大典通編』 「兵典 試取 專經殿講」 : 每年六月、十二月, 內三廳報薦後, 本曹以年四十以下人員抄啓。……;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 配享功臣抄啓, 祔廟時, 禮曹前期稟旨, 應參諸臣, 令政院稟旨牌招。

9年								0
10年			7	1		3		11
11年			2					2
12年	13	22	2		2			39
13年	15	11	8	15	2		2	53
14年	17	2			1			20
15年								0
16年	10	1	2		2		2	17
17年	25	2			1	2		30
18年	12	6	4	12				34
19年	53	1	7	1	2	1		65
20年								0
21年								0
22年								0
23年	9	7	3		1			20
24年	9	2	7		1	4		23
合計	163	54	42	29	12	10	4	314

1) 科試

科試 別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科試에서 入格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의 명단과 성적 및 그들에 대한 시상 내역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科試는 文科, 武科, 雜科, 生員進士科로 나누어 시행되었다.⁶¹⁾ 그중 『일성록』에 기록된 과시 별단은 대부분 武科와 관련된 별단으로, 試射·試放·試講 등에서 入格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의 명단과 성적 및 그들에 대한 시상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63건의 과시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63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병조가 올린 것이 72건, 장용영이 올린 것이 47건, 훈련도감이 올린 것이 8건, 금위영이 올린 것이 7건, 어영청이 올린 것이 6건, 총용청이 올린 것이 4건, 수어청이 올린 것이 3건, 무예청이 올린 것이 5건, 수원 유수나 수원부가 올린 것이 5건, 평안 감사가 올린 것이 2건, 경기 감사가 올린 것이 1건, 규장각이 올린 것이 3건이다.

2) 頒賜

頒賜 別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恩典이나 물품을 하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은전이나 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科試에 入格한 사람 등에게 頒賜한 경우의 별단은 科試 別單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반사 별단은 그 이외의 頒賜와 관련된 별단만을 가리킨다. 반사는 국가나 왕실의 경사를 맞아 은혜를 베푸는 경우, 또는 공로를 세운 신하나 백성에게 시상하는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⁶²⁾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54건의 반사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54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加髢申禁事目을 반하할 대상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22건, 陵園·墓나 廟 및 碑石 등을 조성할 때 노고한 사람의 명단과 시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 15건, 범을 잡은 공로를 세운 사람의 명단과 시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 6건, 元子의 탄생 및 冊禮·陳賀 등 왕실의 경사를 맞아 노고하거나 시상한 사람의 명단과 시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 5건, 정조가 행차할 때 노고한 사람의 명단과 시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 3건, 책자 등을 펴낼 때 노고한 사람의 명단과

61) 이성무, 『韓國의 科學制度』, 집문당, 2000, 113면 참조.

62) 국가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면령을 반포하고 百官에게 加資하는 恩典 등을 베풀었다. 『典律通補』 「吏典 京官格式」 : 頒赦時, 百官加資下批, 資窮者, 子婿弟姪中代如。; 『銀臺便攷』 「吏典」 : 劅使入京翌日, 有頒赦之節, 則前期六日, 提學牌招製進。【赦句, 隨皇赦, 若無皇赦, 則只頒敎。】

시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 3건이다.

3) 抄擇

抄擇 別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해당 사안에 따라 가려 뽑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초택 별단은 科試 別單이나 頒賜 別單과 달리 시상하거나 頒賜하는 내용은 없고 명단만 보고한 경우가 많다.⁶³⁾ 『일성록』에 기록된 초택 별단 중에는 특히 都監과 관련된 별단이 많이 보인다. 都監이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官司로, 勅使를 영접하기 위한 接待都監, 世子의 冊禮를 행하기 위한 冊禮都監, 世子의 冠禮를 행하기 위한 冠禮都監, 王과 王妃의 婚禮를 행하기 위한 嘉禮都監, 국왕이나 王妃의 禮葬을 행하기 위한 墓殿都監·國葬都監·山陵都監 및 세자나 世子嬪의 禮葬을 행하기 위한 墓宮都監·葬禮都監·園所都監 등이 있다.⁶⁴⁾ 이러한 都監에서 필요한 관원의 명단이나 공로를 세운 사람의 명단 등이 초택 별단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回榜을 맞거나 歲饌을 내릴 연로한 사람의 명단 등이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42건의 초택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42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都監이나 所가 올린 것이 21건,⁶⁵⁾ 漢城府가 올린 것이 11건, 監司가 올린 것이 2건, 備邊司가 올린 것이 3건, 議政府가 올린 것이 1건, 忠勳府가 올린 것이 1건, 戶曹가 올린 것이 1건, 禮曹가 올린 것이 1건, 成均館이 올린 것이 1건이다.

4) 孝烈

孝烈 别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孝誠·忠烈·絕義 등이 뛰어난 사람들의 명단과 그 행적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經國大典』에서는 예조가 孝子, 順孫, 節婦, 殤國한 자, 자손이 화목한 자, 患難을 구제한 자처럼 孝友와 節義가 뛰어난 사람 등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권장하도록 하였다.⁶⁶⁾ 『속대전』에서는 忠臣, 孝子, 順孫, 烈女 중 가난한 자에게는 해마다 쌀 5섬을 주고 사계절마다 옷 1벌을 주되, 서울은 예조, 지방은 관찰사가 국왕에게 보고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 孝烈이 특출한 자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상세히 살펴 보고한 뒤에 표창하도록 하였다.⁶⁷⁾ 『대전통편』에서는 孝烈 중에 旌閭하거나 紿復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각 道에서抄啓하고, 그러면 예조가 式年마다 연초에 세 당상이 모여 상세히 살펴보고 의정부로 이송한 뒤에 국왕에게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⁶⁸⁾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29건의 효열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29건의 별단은 모두 예조가 올린 것으로, 孝子·孝婦·孝孫·烈女·節婦·忠臣 등의 명단과 그 행적 등이 실려 있다. 29건 중 15건은 정조 13년(1789) 윤5월 22일에 올린 것이고, 11건은 정조 18년(1794) 7월 16일에 올린 것으로,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정조 13년 10월에 思悼世子를 水原의 顯隆園으로 移葬한 일 및 19년 윤2월에 惠慶宮의 회갑연을 베푼 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⁹⁾

63) 초계 별단 중 科試, 頒賜, 孝烈, 扶助, 老職, 歲抄 등에 속하지 않고 주로 명단만 열거한 별단은 초택 별단으로 처리하였다.

64) 『銀臺便攷』 「禮房攷 國恤·冊禮·冠禮·嘉禮·勅使」; 『銀臺條例』 「禮攷 國恤·迎勅」 참조.

65) 禮葬都監·遷園都監 등 禮葬이나 遷葬과 관련된 都監이 11건, 接待都監이 4건, 冠禮冊儲都監이 3건, 整理所가 3건이다. ‘所’는 ‘都監’이나 ‘廳’보다는 소규모로 설치되는 임시 관사에 붙이는 것이다.

66) 『經國大典』 「禮典 嘉勸」: 孝友節義者, 【如孝子、順孫、節婦、爲國亡身者、子孫睦族、救患之類】 每歲抄, 本曹錄啓獎勸。【賞職或賞物, 尤異者, 旌門、復戶, 其妻守信者, 亦復戶。】

67) 『續大典』 「禮典 嘉勸」: 忠臣、孝子、順孫、烈女有貧寒丐乞者, 每歲米五石, 四節衣一領, 內則本曹、外則觀察使啓聞題給。○ 外方孝烈特異者, 觀察使詳察啓聞旌褒。

68) 『大典通編』 「禮典 嘉勸」: 凡係旌閭、贈職、給復等事, 自政院奉承傳賸布中外。○ 孝烈合旌復者, 諸道抄啓, 每式年歲首, 本曹三堂上齊會詳審, 移送政府後, 別單啓稟。

5) 扶助

扶助 別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나라에서 물품을 내려주어 혼례나 장례를 도와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일성록』에 기록된 부조 별단은 모두 가난한 宗室의 자녀가 婚禮나 葬禮를 치를 때 나라에서 扶助하고 그 명단과 품목을 기록하여 올린 것이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2건의 부조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2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 별로 분류하면, 호조가 올린 것이 6건, 진휼청이 올린 것이 4건, 호조와 진휼청이 올린 것이 2건이다.

6) 老職

老職 别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加資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老職, 또는 老人職이란 나라에서 일정한 연령에 이른 노인에게 주는 資級이나 官職, 또는 封爵을 말한다. 노직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처음 보이는데,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良人이나 賤人을 막론하고 한 자급을 제수하되, 원래 자급이 있던 자에게는 또 한 자급을 더해준다.”라고 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80세 이상인 사람에게 한 자급을 주도록 한 것이다.⁷⁰⁾ 『속대전』에서는 宗親 중 副守 이상으로 80세인 자, 封君·侍從臣·關帥의 아버지로 70세인 자, 東班이나 西班의 實職 4품 이상을 지낸 자로 80세인 자, 士夫나 庶人으로서 100세인 자에게는 加資하도록 하고, 士族의 婦女로서 90세인 자에게는 封爵하도록 하였다.⁷¹⁾ 『일성록』에 기록된 노직 별단에는 노인직으로 加資해야 할 사람의 명단, 노인직을 下批한 사람의 명단, 노인직을 받은 사람 중 조상을 追贈할 사람의 명단 등이 실려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0건의 노직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 별로 분류하면, 한성부가 올린 것이 6건, 이조가 올린 것이 2건, 이조와 병조가 올린 것이 1건, 경상 감사가 올린 것이 1건이다.

7) 歲抄

歲抄 别單은 이조나 병조가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은 전직 관원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歲抄란 이조와 병조가 죄를 지어 罷職되거나 告身을 빼앗긴 관원등의 명단을 單子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것을 말한다.⁷²⁾ 歲抄 單子 중 특정인에 대해 국왕이 낙점을 하거나 황색 종이를 붙이고 啓字印을 찍어서 내려 주면 당사자에 대해서는 죄의 등급을 감해 주거나 蕩滌하거나 다시 斂用하는 조치 등을 내렸다.⁷³⁾ 이처럼 歲抄는 單

69) 惠悼世子는 楊州의 永祐園에 安葬되어 있었는데 鋒城尉 朴明源의 건의에 따라 정조 13년(1789) 10월에 水原으로 옮기고 園의 이름도 顯隆園으로 바꾸었다. 정조 19년(1795) 윤2월에는 정조가 혜경궁을 모시고 수원으로 거동하여 奉壽堂에서 회갑연을 베풀었다. 『정조실록』 13년 7월 11일(을미), 10월 5일(정사)-7일(기미)-8일(경신)-16일(무진),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3일 참조.

70) 『經國大典』 「吏典 老人職」 : 年八十以上, 勿論良賤, 除一階, 元有階者, 又加一階, 堂上官, 有旨乃授。

71) 『續大典』 「吏典 老人職」 : 宗班副守以上年八十、封君之父年七十者, 歲首加資。 ○ 侍從臣父、關帥父年七十者, 每於歲初, 吏兵曹抄啓加資, 而嘉善以上, 毋得變品超資。 ……東西班曾經四品實職以上人員年八十者, 令該曹歲首加資。 ○ 士族婦女年九十者, 令該曹抄啓封爵, 而其夫, 則毋得因妻贈職。 ○ 士庶百歲人加資, 許其子孫上言。

72) 『典律通補』 「吏典 考課」 : 收告身及罷職者, 每冬夏季月, 具罪名啓聞。 【兵曹同】 ○ 有赦, 則啓稟後, 別歲抄書入。】 ; 『銀臺便攷』 「吏房攷 歲抄」 : 每年六、臘月初一日, 自吏、兵曹修呈, 而有入侍之命, 則書出吏、兵房承旨持歲抄入侍傳敎後, 入侍讀奏。; 『六典條例』 「吏典 吏曹 文選司 告身」 : 凡照律奪告身者, 每冬、夏季月初一日及別歲抄時, 具罪名啓聞, 二等以上點下, 則減一等; 一等點下, 則職牒還授。

73) 『典律通補』 「吏典 考課」 : 罷職、罷職不叙、永不叙用, 一下叙; 削職、被謫蒙放、【放逐鄉里、放歸田里等減等, 則同蒙放。】收職牒一等, 二下叙; 二等至五等, 遞加。; 『銀臺便攷』 「吏房攷 歲抄」 : 罷職、罷職不叙、職牒以上點下, 則叙用。 ○ 削職、被謫蒙放、削去仕版、削名仕籍、禁錮以上點下, 則職牒還授。 ○ 收職牒點

子로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일성록』에는 별단으로 기록한 사례가 소수 보인다. 이는 單子와 別單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4건의 세초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4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병조가 올린 것이 2건, 이조가 올린 것이 1건, 이조와 병조가 올린 것이 1건으로, 이 세초에 대한 국왕의 처분이 별단의 중간 중간에 뒤섞여 실려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物目 别單

物目 别單이란 각 官司나 신하가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사람의 숫자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앞에서 人名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별단은 抄啓 别單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물목 별단은 人名을 제외하고 物名 등을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룬다. 즉 행사나 儀式에 들어간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동원된 人力, 백성을 救恤하는데 들어간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사람의 숫자, 각 道와 전국의 人口, 陵·園·墓 등에 심은 나무의 수량, 日官이 잡은 吉日 등을 열거한 것이 물목 별단이라고 할 수 있다. 人名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초계 별단으로 분류하였고, 人名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숫자만 열거된 경우는 물목 별단으로 분류하였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85건의 물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85건을 다시 주제와 내용에 따라 物種, 救恤, 獻民, 植木, 擇日 5가지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물목 별단의 수치를 소분류 및 정조 재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3> 物目 别單

在位年度	物種	救恤	獻民	植木	擇日	合計
即位年			1			1
1年						0
2年			1			1
3年			1			1
4年			1			1
5年			1			1
6年			1			1
7年			1			1
8年	1		1			2
9年			1			1
10年	45	14	1	1	3	64
11年			1			1
12年	6	19	1			26
13年	9	3	2		2	16
14年	1	1	1	2		5
15年	1		1			2
16年	3	7	1			11
17年	2	23	1			26
18年	1	1	2			4

下, 則次次減等, 而只一等, 則職牒還給。○付處減等, 以削黜施行。; 『承政院日記』 正祖 6年 6月 1日 : 傳于徐有防曰：“最遠久例，每於夏冬歲抄時，減等或敍用之人，必皆落點，而否，則付黃籤踏下啓字矣。挽近以來，此規專廢 自今復舊例，此後歲抄，如非落點或付籤，切勿施行，該房微稟事，載之院中古事。”

19年	6	1	1			8
20年			2			2
21年			2			2
22年			1			1
23年			1	1		2
24年	4			1		5
合計	79	69	27	5	5	185

1) 物種

物種 別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행사나 의식 등에 들어간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동원된 사람의 숫자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정조대 『일성록』에 실린 물종 별단은 文孝世子의 장례를 치를 때와 思悼世子를 移葬할 때 들어간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동원된 인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⁷⁴⁾ 그 외에는迎接都監이 勅使를 접대하는데 들어간 물품, 戶曹가 貢人에게 蕩滅해준 물품, 軍器와 祭物, 濟州에서 放牧하는 말 등에 대한 별단이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79건의 물종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79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물품의 이름과 수량을 열거한 것이 60건, 사람의 숫자를 열거한 것이 10건, 사람의 숫자와 물품의 수량을 함께 열거한 것이 9건이다.

2) 救恤

救恤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하여 나라의 救恤을 받은 백성들의 수효와 그에 들어간 물품의 수효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정조대 『일성록』에 실린 구휼 별단은 전염병에 걸린 백성의 수효를 보고한 漢城府와 兩醫司⁷⁵⁾의 별단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병든 백성을 나라에서 치료해 주도록 법전에 규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⁷⁶⁾ 그 외에도 재해를 당하거나 궁핍하여 나라에서 恤典을 베푼 백성의 수효, 賑恤을 행한 고을 및 백성의 수효를 보고한 별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⁷⁷⁾ 賑恤은 公穀을 사용하여 진휼하는 公賑, 公穀을 사용하지 않고 守令이 스스로 곡물을 마련하여 진휼하는 私賑, 진휼할 대상이 적어서 公穀을 사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행하는 救急으로 나누어 행하였는데, 監司와 守令이 진휼을 관장하고 진휼을 마친 뒤에는 책자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⁷⁸⁾ 『일성록』에는 각 지방의 감사가 饑民의 숫자와 分給한 곡물 수량을 別單이나 後錄으로 보고한 기록이 다수 보이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와서 진휼 사업이 확대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⁷⁹⁾ 흉년 이외에 집이 무너지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등의 재해를

74) 文孝世子는 정조 10년(1786) 5월 11일에 사망하여 그해 윤7월 19일에 孝昌墓에 安葬하였다. 『正祖實錄』 10年 5月 11日(癸丑)閏7月 19日(庚寅) 참조. 思悼世子는 주) 71 참조.

75) 民惠署와 典醫監을 가리킨다.

76) 『경국대전』에서는 서울의 병든 백성이 五部에 고하면 즉시 月令醫를 보내 치료해주도록 하였고, 『속대전』에서는 서울과 지방에 전염병이 돌 때 집안 가족이 모두 죽어 매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戶曹, 賑恤廳, 각 道에서 恤典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經國大典』 「禮典 恤恤」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報本曹.; 『續大典』 「禮典 恤恤」 :京外癘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賑恤廳及諸道恤典舉行。

77) 賑恤을 시행한 고을 수령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별단은 문전 별단의 '所見'으로 분류하였으며, 恤典과 관련된 별단 중 人名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초기 별단의 '抄擇'으로 분류하였다.

78) 『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外邑設賑」 :設賑時, 監司、守令句管抄出飢戶分巡饋賑, 而修報成冊, 穀物, 以他公穀及常賑穀會減 畢賑後, 狀啓啓下賑廳, 穀物區處、守令褒賞等事, 該廳稟處。; 『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外邑分賑式」 :用公穀, 謂之公賑; 不用公穀而守令自備賑給, 謂之私賑; 或賑口數少不費公穀者, 謂之救急。

79) 문용식, 『朝鮮後期 財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년, 79면 참조.

당한 백성에 대해서도 漢城府가 별단을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賑恤廳에서 재해 정도에 따라 恤典을 지급하였다.⁸⁰⁾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69건의 구휼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69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병민의 수효를 보고한 것이 51건,⁸¹⁾ 재해를 당하거나 궁핍한 백성의 수효를 보고한 것이 8건, 賑恤을 행한 고을 및 백성의 수효를 보고한 것이 10건이다.

3) 獻民

獻民 別單은 한성부가 戶口와 백성의 수효를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經國大典』에서는 3년마다 戶籍을 수정하여 戶曹, 漢城府, 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고, 『續大典』에서는 3년마다 전국의 人口와 戶口를 별단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大典通編』에서는 호조에서 관리하던 戶籍을 한성부가 관리하도록 변경하고 人口와 戶口를 3년마다 보고하던 것도 해마다 연말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였다.⁸²⁾ 한성부가 별단으로 보고한 전국의 戶口와 人口는 『일성록』의 매년 12월 말일 기사에 기록되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1년(1777)을 제외하고 즉위년부터 24년까지 해마다 연말 기사에 전국의 戶口와 人口를 보고한 한성부의 별단이 기록되어 있다.⁸³⁾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27건의 현민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27건은 모두 한성부가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전국의 호구와 인구를 기록한 것이 22건, 濟州의 호구와 인구를 기록한 것이 4건, 五部의 호구와 인구를 기록한 것이 1건이다.

4) 植木

植木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陵·園·墓 등에 나무를 심거나 씨알을 뿌린 뒤 그 종류와 수량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續大典』에서는 濟州에 稀貴한 과실수를 심도록 권장하였다.⁸⁴⁾ 『大典通編』에서는 소나무를 1000주 이상 심어 재목을 이룬 자에게는 論賞하도록 하였고, 江華府의 바닷가에는 海松 씨알을 보내 파종한 뒤 수량을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⁸⁵⁾ 정조는 景慕宮에 심은 나무의 상태를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⁸⁶⁾ 顯隆園을 조성한 뒤로는 주변 고을의 백성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나무를 심었으며,⁸⁷⁾ 22년(1798)에는 각 陵과 園에 씨알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데 전념하고 그 수효를

80) 『銀臺便攷』 「戶房攷 摂要」 : 以漢城府民家頽壓別單, 恤典擧行, 待下敎卽爲分付賑恤廳。【若多戶, 則卽爲分給事, 分付, 入啓前, 原單子直爲書入, 啓下後, 依例書出。】; 『六典條例』 「戶典 賑恤廳 別下恤典」 : 民家頽壓。【全頽、全漂, 各錢三兩; 頽多完少、完多頽少者, 各錢二兩。】; 『六典條例』 「戶典 賑恤廳 外恤典」 : 漂戶。【全家漂失, 租一石; 漂壓, 七斗; 漂頽, 七斗五升。】

81) 그중 漢城府가 보고한 것이 38건, 兩醫司가 보고한 것이 13건이다.

82) 『大典通編』 「戶典 戶籍」 : 『原』每三年, 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增』 本曹藏籍今廢每式年翌春, 藏帳籍於江都, 仍曠舊籍。】……每式年, 中外人戶, 別單啓下, 付史官。【『增』 依周禮獻民數之制, 每歲末, 中外戶口實數, 京兆入啓, 付史官。】

83) 그중 정조 4년(1780)의 현민 별단에는 한성부 五部의 戶口와 人口만 기록되어 있다. 『일성록』 정조 4년 12월 29일 참조.

84) 『續大典』 「工典 栽植」 : 濟州等三邑, 稀貴果木, 令居民栽植培養, 考其勤慢, 賞罰勸懲。唐柑子·唐柚子各八株、乳柑二十株、洞庭橘十株栽植者, 復戶; 唐柑子·唐柚子各五株、乳柑·洞庭橘各十五株栽植者, 紿綿布三十匹。若受賞及復戶後不用心培養致令枯損者, 還納賞布, 又還本役。復戶人栽植數, 每六年通計, 元數外倍數者, 量給賞布, 每歲抄啓聞。

85) 『大典通編』 「工典 栽植」 : 外邑人私植松一千株可成材者, 該守令親審報觀察使論賞。○ 江華府沿邊, 每歲送海松子播種, 竝與種枳數爻別單以聞。

86) 『政院故事』 「禮攷 景慕宮植木」 : 本宮植木案, 依會計案例, 四孟朔, 宮司請出植木舊案, 植木之生枯數爻, 修整入啓事, 下敎。【壬寅十一月初九日。】

87) 『承政院日記』 正祖 15년 6월 6일 : 上曰: “植木等事及外此凡節, 如有可以稟達者, 一依所見詳細陳達可也。”……鳳顯曰: “臣遍審局內種樹處, 則長峯萬戶張世紈之主管所種, 則今爲着根者十之八九。……”; 『承政院日記』 正祖 16년 4월 4일 : 上命書傳敎曰: “顯隆園植木, 自己酉至今年, 用八邑民力, 幸得告成, 其在重其事之道, 分等

해마다 3월과 10월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국왕에게 별단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⁸⁸⁾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5건의 식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5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예조가 올린 것이 2건, 顯隆園이 올린 것이 2건, 補土所가 올린 것이 1건으로, 그중 3건은 陵·園·墓에 나무를 심거나 씨알을 뿌린 수효를 기록한 것이고, 2건은 顯隆園과 英陵에 補土한 구역과 면적을 기록한 것이다.

5) 擇日

擇日 別單은 각 官司나 神하가 日官이 잡은 吉日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祭享, 入學, 嘉禮, 陳賀, 科試, 啓覆, 動駕 등 각종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미리 日官을 시켜 吉日을 잡도록 하였다.⁸⁹⁾ 이는 의식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그날의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길일을 잡을 때에는 일관의 성명을 기록하게 하였다가 당일에 비가 내리면 해당 일관을 처벌하기도 하였다.⁹⁰⁾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5건의 택일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5건은 모두 禮葬이나 遷葬과 관련된 都監에서 올린 것으로, 3건은 文孝世子를 장사지낼 때의 택일을 기록한 것이고, 2건은 사도세자를 顯隆園으로 移葬할 때의 택일을 기록한 것이다.

3. 聞見 别單

聞見 别單은 神하가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중국에 파견된 使臣과 지방에 파견된 御史는 왕명을 수행하고 나서 復命할 때 書啓와 함께 聞見 别單을 올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⁹¹⁾ 『일성록』에 실린 문건 별단은 대부분 이들이 올린 별단이 차지한다. 이들 외에 奉審이나 摘奸 등을 위해 파견된 承旨나 史官 등도 임무를 마치고 나서 書啓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聞見 别單을 함께 바친 사례가 보인다.⁹²⁾ 개인적인 所見이나 다른 관원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여 보고한 所見 别單, 實

紀勞, 豈可或緩乎? 令尹守翼誠勤, 到處可尚, 一次監植, 勝於他人之數次, 待準瓜, 準職陞敍。……”

88) 『政院故事』 「禮攷 各陵奉審」：自今專意播植，每年三月十月，以其數爻報來，自該曹別單草記，則以受香獻官、奉審承旨或史官、宣傳官抽性考察，以爲懲慢賞勤，而亦當間數年拔例致察，以此書揭齋壁。西五陵局內，則既有蜂峴摘奸之行，自當一體奉審，以此定式事，因東西陵園奉審承旨舉條批答。【戊午七月初九日。】

89) 『大典通編』 「禮典 祭禮」：太廟臘享外時享擇日，勿用國忌，齋日正日。；『續大典』 「刑典 推斷」：凡死罪 啓覆，秋分後，承政院卽爲啓稟，以九月十月內擇日舉行。；『典律通補』 「禮典 諸科」：大小科設場擇日，呈券限時。；『銀臺便攷』 「禮房攷 入學」：入學有命，則該曹擇日舉行。；『銀臺便攷』 「禮房攷 嘉禮」：親迎吉日，先定擇日稟定，六禮吉日，分排擇入。；『銀臺便攷』 「禮房攷 陳賀」：別陳賀時，該曹擇日啓下後，廟社宮先告事由祭，稟旨設行，陳賀處所，亦爲先期自該曹稟定。

90) 『銀臺便攷』 「通攷 通行事例」：乙卯七月二十四日，凡擇日不書日官姓名者，勿爲捧入事，下敍。；『承政院日記』 正祖 15年 10月 11日：如朝賀、封冊、諫享、動駕、試土、閱武等諫吉後，禮曹，以推擇日官姓名書啓，以驗涓擇之能否，本監訓長，依井問詳記，提調着押後，踏印封置一錯，則越布；再錯，則越布越料；三錯，則拔之兼敍授取才，至於屢錯而終不可勝任者，自本監草記刊汰何如？；『承政院日記』 正祖 19年 7月 24日：諸凡推擇，皆書日官姓名定式，已久，惟本曹文書，依舊不書，後勿如是，亦令政院知悉，不書日官姓名，則勿爲捧入可也。

91) 『銀臺便攷』 「吏房攷 御史」：御史復命時，書啓、別單及事目冊、鑰尺、馬牌封，同爲入啓，有入侍之命，則以暗行御史入侍書出。……京畿暗行御史金銚入來，而只納書啓，不呈別單，各邑弊瘼及孝烈等事，混錄於書啓中，原書啓捧入，當該御史推考事，本院啓辭，傳曰：“允。”【壬戌六月初三日。】；『銀臺便攷』 「禮房攷 使臣」：書狀官逐日記事，回還後，與首譯聞見別單，同爲入啓。……使臣復命時，回答文及唐報、書狀書啓、首譯聞見別單與入來肅單，同爲封入。

92)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潦雨時，各陵有頃，則陵官報禮曹，禮曹啓稟，而隨有頃輕重，議政或禮堂進去奉審，議政以下陵上有頃處奉審後，書啓及圖畫入來，則請承傳色入之。……宗廟、社稷、景慕宮、南壇，承旨監祭；【景慕宮若閣臣差祭，則無監祭，南壇仍留監祭，則有書啓。】永禧殿、文廟、三角山、木覓山、漢江壇、先農壇、先蠶壇、雩祀壇，史官監祭。……畿伯停巡時，各陵園墓奉審，承旨代行奉審，【何承旨進去啓辭爲之。】或道內守令中曾經承旨代行，守令中如無曾經承旨，則秩高守令中假承旨差下，分詣奉審。【書啓，亦前承旨某州牧使馳啓云

錄이나 冊子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보고한抄出別單, 표류한 외국인을 조사하여 보고한問情別單,擊錚한 사람의 진술을 받아 보고한原情別單 등도 넓은 의미의 문건 별단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24건의 문건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24건을 다시使行, 御史, 奉審, 所見,抄出,問情,原情 등 7가지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문건 별단의 수치를 소분류 및 정조 재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4> 聞見 別單

在位年度	使行	御史	奉審	所見	抄出	問情	原情	合計
即位年			2					2
1年								0
2年								0
3年								0
4年	3							3
5年	2							2
6年								0
7年								0
8年	1							1
9年								0
10年	26	1		2				29
11年	2	9						11
12年	2							2
13年	2	1		1				4
14年	3	3		2		1	2	11
15年	1							1
16年	2		1	1				4
17年	1	6		3	1			11
18年	3	7	3	1		1		15
19年	3	6	2	1	1			13
20年								0
21年								0
22年								0
23年	5	4			1			10
24年	5							5
合計	61	37	8	9	5	2	2	124

1) 使行

使行別單은 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使臣 일행이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원이 외국 사신의 동정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는 나라로는 중국과 일본을 들 수가 있겠다.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으로는冬至使, 謝恩使, 奏請使, 進賀使, 陳慰使, 進香使, 問安使, 卜誣使 등이 있었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齋容官이나譯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⁹³⁾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으로는通信使가 있었고, 일본에慰問이나弔文할 일이 있을 경

云。】

93) 『通文館志』 卷3 「事大上 赴京使行」：國初歲遣朝京之使，有冬至、正朝、聖節、千秋四行，謝恩、奏請、進賀、陳慰、進香等使，則隨事差送。……自崇德以來，無千秋使而有歲幣使，至順治乙酉，因勅諭，乃并三節及歲幣爲一行，而必備使、副使、書狀官三員，名之曰冬至使，歲一遣之，其他有事之使，并如舊。；『通文館志』 卷3

우에는 渡海譯官을 과견하였다.⁹⁴⁾ 중국에 과견되는 사신 일행 중에는 書狀官과 首譯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⁹⁵⁾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勅使를 과견한 경우에는 遠接使, 館伴使, 伴送使, 邀慰使, 問慰官 등을 차출하여 이들을 접대하거나 문안하도록 하였고,⁹⁶⁾ 일본에서 差倭가 나올 경우에는 接慰官을 차출하여 접대하도록 하였다.⁹⁷⁾ 이처럼 勅使나 差倭를 접대하거나 문안하는 일을 맡은 사신도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올렸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61건의 사행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61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 별로 분류하면, 正使·副使가 올린 것이 8건, 書狀官이 올린 것이 18건, 首譯이 올린 것이 10건, 別軍職이나 假承旨 등이 칙사 행차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것이 24건, 接慰官이 올린 것이 1건이다.

2) 御史

御史 別單은 御史로 과견된 관원이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御史로는 暗行 御史를 대표로 꼽을 수 있으나, 그 외에도 監賑, 慰諭, 按覈, 試才 등을 위해 과견되는 御史가 있었다.⁹⁸⁾ 이들 어사는 왕명을 수행하고 나서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며, 별단을 올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⁹⁹⁾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37건의 어사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37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 별로 분류하면, 暗行 御史가 올린 것이 31건, 慰諭使나 慰諭 御史가 올린 것이 4건, 慰諭按覈巡撫試才 御史가 올린 것이 1건, 慰諭兼查正 御史가 올린 것이 1건이다.

3) 奉審

奉審 別單은 왕명을 받은 신하가 奉審한 결과를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事大 齋咨行」：凡有事奏稟，而關係不重不必備正副品使者，擇才堪專對院官，咨行禮部。

94) 『銀臺便攷』 「禮房攷 交隣」：關白卒，馬島送大差倭告訃，東萊府使據此狀啓，差京接慰官及問慰渡海譯官以待之。馬島次送新關白承襲告慶大差倭，遣接慰官待之，一如告訃例；馬島次送通信使請來大差倭，遣接慰官及差備譯官待之，一如告慶例。；『六典條例』 「禮典 禮曹 典客司 接倭」：大差倭出來時，京接慰官及渡海差備官啓請差出。；『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交隣」；彼有問慰、弔慰之事，則遣裁判差倭，請來問慰官，自萊府具由狀聞，廟堂覆啓，許施後，差遣渡海官。【船隻新造，廟堂知委；一行盤纏，該曹備給。】；『六典條例』 「禮典 禮曹 典客司 通信」：日本國有哀慶，而遣大差倭來請送使，則差遣通信正、副使及從事官，齋往國書，日本國王、執政以下別幅物種及公·私禮單有差；『通文館志』 卷6 「交隣下 通信使行問慰行」；『增正交隣志』 卷5 「通信使行」，卷6 「問慰行」 참조。

95) 『銀臺便攷』 「禮房攷 使臣」：書狀官逐日記事，回還後，與首譯聞見別單，同爲入啓。……使臣復命時，回咨文及唐報、書狀書啓、首譯聞見別單與入來肅單，同爲封入。；『六典條例』 「禮典 司譯院 總例」：年貢與別使復命日，書狀官日記、塘報及聞見事件入啓，首譯聞見事件，同爲入啓。

96) 『銀臺便攷』 「禮房攷 勅使」：遠接使，備邊司差出，而齋去節目，自禮曹依例啓下。……勅使出來時，黃州、平壤、安州、定州、義州五處迎慰使及平壤問安假承旨，依近例以道內守令借啓差下。……問禮官，吏曹差出，而齋去儀註二件，自禮曹來呈，則以司謁入啓。……館伴使及迎接都監提調一、郎廳八，自吏曹差出。……勅使回還時，開城、平壤、義州三處別問安使，以道內守令借啓差下。……伴送使，備邊司差下，自吏曹依例以禮判借啓，若無職名，則付軍職事，自吏曹草記。

97) 大差倭가 나올 때에는 京接慰官을 차출하여 보냈고, 小差倭나 別差倭가 나올 때에는 鄉接慰官을 경상도에서 문신 당하 수령 중에서 차출하였다. 주) 96 참조. 『續大典』 「禮典 待使客」：對馬島主還自江戶，則差送問慰譯官。○ 大差倭出來，則差遣京接慰官。【尋常差倭，則以守令中文官差接慰官。】

98) 당하관으로 차출할 경우에는 ‘御史’라고 하였으나 당상관으로 차출할 경우에는 ‘使’나 ‘御使’라고 불렀다. 『銀臺便攷』 「禮房攷 祈告祭」：純宗朝壬午，濟州疹氣熾盛，別遣慰諭御史，設行慰諭祭。；『六典條例』 「吏典 吏曹 文選司 差定」：按覈使，【二品至堂上官】 監賑使，【堂上官】 ○ 堂上差下，則御史。【堂下官】 ○ 已上勿拘銓官相避。】 試才御史。【堂下官】 ○ 已上勿拘銓官相避。】

99) 주) 93 참조.

奉審은 承旨나 史官 등이 왕명을 받아 廟·社·殿·宮·陵·園·墓 등에 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宗廟와 각 陵寢 등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봉심하고 그 결과를 書啓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경우 별단을 작성하여 함께 올렸다.¹⁰⁰⁾ 그 외에 民情·農況이나 일의 진행 상황 등을 살피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奉審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8건의 봉심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8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史官이 올린 것이 3건, 承旨가 올린 것이 1건, 判中樞府事가 올린 것이 1건, 賓廳이 올린 것이 1건, 監司가 올린 것이 1건, 閣臣이 올린 것이 1건이다.

4) 所見

所見 別單은 각 官司나 稽하가 개인적인 견해나 다른 관원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일성록』에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 등에 대한 견해, 賑恤을 거행한 고을 수령에 대한 실적 평가, 국왕의 지시를 이행한 결과 보고 등이 별단으로 실려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9건의 소견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9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監司가 올린 것이 5건, 府使가 올린 것이 2건, 備邊司가 올린 것이 2건이다.

5) 抄出

抄出 别單은 각 官司나 稽하가 實錄이나 冊子 등에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朝鮮王朝實錄』은 5곳의 史庫에 보관하였는데, 實錄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春秋館의 관원이抄出하여 별단으로 보고하였다.¹⁰¹⁾ 그 외에도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내용을 뽑아서 별단으로 작성하여 올렸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5건의 초출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5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와 내용별로 분류하면, 春秋館이나 춘추관 당상관이 실록에서 초출한 것이 3건, 監司가 獄案을 초출한 것이 1건, 호조 판서가 糧餉廳의 제도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초출한 것이 1건이다.

6) 問情

問情 别單은 問情官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외국인에게 경위를 심문한 뒤 그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청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경우에는 서울에서 問情官을 파견하거나 해당 道의 譚學 등이 경위를 심문한 뒤에 청나라 사람은 水路나 陸路 중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일본 사람은 水路로 돌아가게 하였다.¹⁰²⁾ 이때 심문한 내용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2건의 문정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2건을 별단 작성의 주체별로 분류하면, 1건은 승지 李儒慶과 경기 감사 徐龍輔가 濟州에 표류해온 琉球國 사람을 심문한 뒤에 올린 별단이고, 1건은 제주 목사 李喆模가 제주에 표류해온 琉球國 사람을 심문한 뒤에 올린 별단이다.

7) 原情

100) 『大典通編』 「禮典 奉審」;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참조.

101) 『典律通補』 「禮典 雜令」: 春秋館時政記, 右史修藏於本館史庫, 國恤後, 設廳修實錄, 藏於五處史庫。【
《經》《補》 ○ 江華鼎足山城、江陵五臺山、茂朱赤裳山城、奉化太白山及本館。; 『銀臺便攷』 「禮房攷 實錄」:
乙未實錄校正時, 因大提學趙寅永所啓, 實錄書法考出次, 江華史庫實錄奉來, 取式校正。【春秋館堂上一員、翰林一
員進去, 實錄奉來時, 前後射隊軍除之, 只挾輦軍二十名陪輦入來。】

102) 『典律通補』 「禮典 事大」: 漂人船破從陸, 則押送, 山海關以內人, 傳咨北京; 以外人, 傳鳳凰城, 值節行, 則
順付。; 『典律通補』 「禮典 交隣」: 漂倭, 自所泊處押付倭館。; 『銀臺便攷』 「禮房攷 交隣」: 英宗朝, 漂
民領來倭船到機張前洋漂破, 因該府狀聞, 漂破倭木一疋、米一石各爲題給, 破船倭入送之意, 修書契定禁軍下送。
『六典條例』 「禮典 司譯院 交隣」: “沿海各邑, 若有漂人而問情事繁, 則以善華語者, 問情官擇送。”

原情 別單은 각 官司가 擊錚한 사람의 진술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原情은 罪人이나 擊錚한 사람이 범죄 사실이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 또는 그 내용을 가리킨다.¹⁰³⁾ 원정은 원래 刑曹나 義禁府 등의 官司에서 草記나 啓目 안에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⁰⁴⁾ 『일성록』에는 다른史料와 달리 격쟁한 사람들의 원정이 다수 실려 있는데, 원정을 草記나 啓目 안에 인용 형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별단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사례가 일부 보인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2건의 원정 별단이 기록되어 있다. 2건 모두 형조가 격쟁한 사람들의 원정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4. 節目·事目 別單

節目·事目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節目이나 事目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節目과 事目은 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절목과 사목은 국왕의 지시나 官司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¹⁰⁶⁾ 그 내용은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官司나 官職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절목과 사목은 그 성격이나 내용 및 작성 형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으며 차이점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 실제 實錄과 『承政院日記』 등에서도 절목과 사목을 구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¹⁰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성록』에서 사용한 어휘에 따라 節目 别單과 事目 别單을 구별하였다.¹⁰⁸⁾

103) 擊錚은 上言과 함께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四件事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 상언은 본인이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바쳤으나, 격쟁은 상언과 달리 문서를 바칠 필요 없이 징이나 팽과리 등을 울려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알리고 그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1996년, 19~28면 참조.

104) 『續大典』 「刑典 推斷」 : 罪人原情, 口傳取招, 勿許文字書納。……○ 凡京外官推考, 各其司直捧公緘, 照律始啓, 奉傳旨推考, 則勿拘傳旨, 須原情取招。";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議律」 : "特教定律名者, 勿捧原情, 草記勘處。【照律草記, 無功議區別之敎, 本府言送政院微稟。】"

105) 김인걸 등, 「『備邊司瞻錄』 수록 ‘事目’, ‘節目’의史料的 가치」,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년, 7면; 조계영, 「비변사 소관의 節目·事目的 특징과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국역사업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8, 58면 참조.

106) 절목과 사목은 중앙의 衙門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문, 심지어 민간에서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김인걸 등, 위의 논문 8~9면; 조계영, 위의 논문 58면 참조.

107) 예를 들어 ‘齋去事目’을 ‘齋去節目’으로 부르거나 ‘年分事目’을 ‘年分節目’으로 부르는 경우 등이 있다. 『承政院日記』 孝宗 6年 1月 30日 : 推刷都監啓曰：“推刷御史齋去節目，臣等會于備局，相議磨鍊，別單書入，而倉卒之間，恐欠詳悉，未盡條件，則追後磨鍊以入之意，敢啓。”傳曰：“此磨鍊事目，似好。”； 『承政院日記』 英祖 39年 10月 8日 : 濟州慰諭試才兼巡撫御史齋去事目，參考前例磨鍊以入之意，敢啓。；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8月 17日 : 光佐曰：“臣於昨日，取見戶判年分節目，則誠爲過峻。……”寅明白曰：“臣亦昨見戶判，以沿海邑給分數災，野邑給全災，事目中，不可不區別之意，言之，而年分事目，常年則固當早爲頒布，而今年則節晚，年事尚未出場，雖稍遲無妨，趁今晦開初成送，亦不至後時矣。”； 『成宗實錄』 21年 5月 21日(壬申) : 先是，禮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臣等意，松站距我國不遠，義州等處人民，不無潛投者，禁防節目，請令兵曹議啓。”上從之。至是，兵曹議事目以啓。

108) 절목과 사목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위에서 언급한 조계영의 논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를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김경용의 「역주 과거사목 연구」(『교육사학연구』 제22집 제2호, 교육사학회, 2012년, 149~174면), 여영기의 「童蒙禮講瞻錄 과 癸亥年童蒙禮講節目的 再構成」(『교육사학연구』 제23집 제1호, 2013년, 115~157면) 등 개개의 절목이나 사목에 대한 연구가 있다.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에서는 『備邊司瞻錄』에 실린 372건의 절목과 사목에 대한 解題를 싣고 있

이러한 절목과 사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문서가 별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⁹⁾ 다만 절목과 사목을 올릴 때 별단이 아닌 單子를 사용한 사례가 보이기도 하는데,¹¹⁰⁾ 이는 절목과 사목을 별단이 아닌 單子로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때의 단자가 별단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單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단자로 올린 절목과 사목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절목과 사목을 올린 문서는 모두 별단으로 간주하였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75건의 절목·사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75건을 다시 節目과 事目 2가지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절목·사목 별단의 수치를 소분류 및 정조 재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5> 節目·事目 別單

在位年度	節目	事目	合計
即位年			0
1年			0
2年			0
3年			0
4年			0
5年			0
6年			0
7年			0
8年			0
9年			0
10年	9	7	16
11年	2		2
12年	5	1	6
13年	4	1	5

는데, 절목과 사목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하나로 묶어 서술하고 있으며, 조계영의 논문도 동일하다. 다만 김인걸 등은 조선 전기의 實錄에 실린 절목·사목이 현실적으로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과거에 제정된 절목·사목을 추후에 보완·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진 데 반해, 조선 후기의 실록과 『備邊司瞻錄』에 실린 절목·사목은 사회경제사적인 현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문서나 책자로 남아있는 절목과 사목의 형식과 내용도 서로 유사하다. 절목과 사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걸 등, 「『朝鮮王朝實錄』의 節目·事目 자료와 『備邊司瞻錄』」,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2002년, 15-23~24면 참조.

109) 『光海君日記』 12年 4月 27日(甲戌) : 若待大臣收議, 則尤爲可慮 遽以兩朝實錄節目, 先爲別單書啓。上裁施行何如? ; 『仁祖實錄』 4年 2月 19日(壬辰) : 禮葬時各祭節目, 令都監, 同議大臣, 自都監別單書啓, 而發引時應行節目, 亦與都監, 同議于大臣, 參酌磨鍊, 別單書啓之意, 敢啓。; 『顯宗實錄』 5年 2月 3日(丙申) : 舉子都目, 不可不前期整頓, 書入試取節目於別單。; 『肅宗實錄』 37年 12月 26日(庚辰) : 備邊司以良役變通事, 作爲節目, 別單書入。; 『英祖實錄』 51年 12月 8日(辛亥) : 議政府以王世孫聽政節目別單入啓。; 『肅宗實錄』 1年 9月 26日(辛亥) : 五家統事目, 緣論議不一, 久未完定, 今始停當, 別單書入。; 『肅宗實錄』 43年 1月 5日(庚申) : 魚鹽收稅事, 商議減捧事目, 別單書入啓後, 定爲恒式。; 『純祖實錄』 20年 3月 27日(癸未) : 改量事目別單。; 『高宗實錄』 18年 10月 20日(己卯) : 本衙門鑄錢, 來十一月初三日爲始, 宣惠廳別倉內, 設所開鑄, 而應行事目, 別單書入。

110) 『中宗實錄』 23年 4月 16日(丁巳) : 巡邊使許磁, 以事目磨鍊單子入啓。; 『光海君日記』 1年 3月 10日(辛卯) : 前啓下先後天使時應行節目單子及遠接使齋去事目單子中, 竝以烏紗帽、黑角帶, 改付標之意, 敢啓。; 『肅宗實錄』 43年 7月 25日(丁丑) : 王世子聽政節目, 史官瞻出江華實錄, 玉堂博考唐朝儀節, 啓下許久, 而待諸大臣問議, 故日勢漸晚 不得已草定節目, 已書單子, 臣請讀之。; 『景宗實錄』 卽位年 6月 13日(戊申) : 先五日甲辰, 禮曹以嗣位節目單子入啓。

14年	8		8
15年			0
16年	8		8
17年	17	1	18
18年	4	1	5
19年	2		2
20年			0
21年			0
22年			0
23年	1	1	2
24年	2	1	3
合計	62	13	75

1) 節目

節目 別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節目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節目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에 대한 규정, 행사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기존 제도의 개혁 및 폐단의 구제에 대한 규정, 소속 관원·군병의 대우나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62건의 절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62건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壯勇營·拜峯鎮·漢旅의 신설처럼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에 대한 것이 23건, 發勦과 返虞의 절차나 紅疫의 구료 절차에 대한 규정처럼 행사나 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 17건, 加髢·潛商의 금지나 平薪鎮·廣興倉 등의 폐단 구제에 대한 규정처럼 기존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단을 구제하는 일에 대한 것이 11건, 書寫忠義衛의 遷轉이나 咸興本宮宮屬의 朔料에 대한 규정처럼 소속 관원·군병의 대우나 관리에 대한 규정이 11건이다.

2) 事目

事目 别單은 각 官司나 신하가 事目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린 별단을 가리킨다. 事目은 새로 설치되는 官司나 官職에 대한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신하의 복무 지침, 폐단을 금지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조대 『일성록』에는 총 13건의 사목 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3건은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禮葬都監·迎接都監이나 陪往大將 등의 신설에 따른 규정이 6건, 使臣이나 御史 등이 왕명을 봉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이 4건, 潟運·科舉 등의 폐단을 금지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대한 규정이 3건이다.

IV. 맷음말

『日省錄』에는 신하나 각 官司가 올린 別單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일성록』에 수록된 별단은 이미 문서로서의 형식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만,¹¹¹⁾ 별단의 문서적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성록』에 수록된 별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성록』에 기록할 문서는 대부분 승정원이 編綴한 傳敎軸 안에서 골랐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지 않는 문서인 별단은 傳敎軸에도 편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문서 형태의 별

111) 최승희는 ‘甲과 乙사이에 어떤 目的을 가지고 授受되는 글’을 문서라고 정의하고, 書籍 안에 編纂·編輯된 문서는 문서에서 제외하였다.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5, 17~23면 참조.

단을 그대로 규장각에 보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을 설치한 뒤로는 入直하는 檢書官이 문서를 수집하여 초본을 작성하고 閣臣이 교열하였다.¹¹²⁾ 이 과정에서 별단은 『일성록』에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앞에서는 大字와 小字의 기록 여부 및 본 문서와 별단의 구별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별단의 형식적인 특징은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 별단의 종속성이다. 별단은 본 문서가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문서이다. 이 점은 별단이 單子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둘째, 별단의 독립성이다. 별단은 본 문서와 구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문서이다. 이 점은 별단이 後錄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셋째, 별단의 간편성이다. 별단은 서두와 말미에 별다른 투식이 없고 작성자의 서명과 官印의 날인 등도 없어서 문서 작성이 간편한 문서이다. 이 점은 啓本이나 啓目처럼 작성 방식이 엄격한 문서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正祖代의 『일성록』에 기록된 별단은 총 698건으로, 『正祖實錄』의 139건이나 正祖代 『承政院日記』의 17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별단의 수량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일성록』의 별단이 훨씬 다양하다는 것은 별단의 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총 698건의 별단 중 抄 啓 別單이 314건, 物目 別單이 185건으로 두 가지 별단의 합계가 전체 별단 수량의 절반이 넘는다. 이는 『정조실록』에 실린 별단이 대부분 聞見 別單 중 使行 別單과 御史 別單 및 節目 別單과 事目 别單인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계 별단은 다시 科試, 頒賜, 抄擇, 孝烈, 扶助, 老職, 歲抄로 나누어지고 물목 별단은 物種, 救恤, 獻民, 植木, 擇日로 나누어지므로, 그 내용의 다양함을 짐작할 수가 있다.

별단의 내용적인 특징도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 별단의 다양성이다. 앞에서 별단을 4가지로 대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시 21가지로 소분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 다양한 문서라는 점이다. 둘째, 별단의 정밀성이다. 별단에는 科試에서 입격한 사람 및 그들에 대한 시상 내역, 행사나 儀式에 소요된 물품과 동원된 인력 등 하찮다고 할 만한 내용조차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별단의 일목요연성이다. 별단은 항목별로 열거하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일목요연한 문서이다.

문서를 보존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책자에 기록하는 것은 근거를 남겨두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성록』처럼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편찬된 사료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일성록』은 수많은 기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¹¹³⁾ 정조가 다양한 내용의 별단을 『일성록』에 남긴 것도 국정 운영에 참고하고 후일에 근거로 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이러한 기록 정신은 그 뒤의 『일성록』에도 계속 반영되었고, 그중에서 별단 기록은 『일성록』만의 특징 중 한 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하겠다.

112) 柳本藝, 『日省錄凡例』 「序」 : 己亥設內閣以後, 仍命閣臣代撰成書, 而其出草, 則入直檢書掌之, 每日收輯諸文書出草後, 閣臣監正之。 홍순민은 정조 5년부터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 등 정조 측근의 신하들이 『일성록』 편찬을 주관하다가 정조 8년 말부터 규장각이 전담한 것으로 보았다. 홍순민, 『日省錄』의 편찬 과정과 구성 원리, 『민족문화』 2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9, 5~11면 참조.

113) 연갑수,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민족문화』 2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9, 40면 참조.

참고문헌

원전 자료

- 崔桓 등,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7.
- 金在魯 등, 『續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 金致仁 등, 『大典通編』,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 趙斗淳 등, 『大典會通』,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 具允明, 『典律通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 承政院, 『銀臺便攷』,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 趙斗淳 등, 『六典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 金指南, 『通文館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 金健瑞 등, 『增正交隣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 承政院, 『政院故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柳本藝, 『日省錄凡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徐榮輔 등, 『萬機要覽』, 경인문화사, 1979.
- 奎章閣, 『日省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承政院, 『承政院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jw.history.go.kr>).
- 實錄廳, 『朝鮮王朝實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 奎章閣, 『內閣日曆』,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健陵遷奉都監, 『健陵遷奉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延慶墓所都監儀軌, 『延慶墓所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承政院, 『傳敎軸』,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 홍기은 등, 『국역 일성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연구 논저

- 김인걸 등, 「『備邊司瞻錄』 수록 ‘事目’, ‘節目’의 史料的 가치」,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김인걸 등, 「『朝鮮王朝實錄』의 節目·事目 자료와 『備邊司瞻錄』」, 『備邊司瞻錄 事目·節目類 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명경일,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제44호, 2014.
-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 연갑수,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민족문화』 2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9.
- 이강욱, 「『承政院日記』의 記事分合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송정원일기 정보화사업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년 11월 14일.
-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이성무, 『韓國의 科舉制度』, 집문당, 2000.

조계영, 「비변사 소관의 節目·事目的 特징과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국역사업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8년 4월 25일.

최승희, 「『일성록』 해제」, 『국역 일성록』, 민족문화추진회, 1998.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5.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1996.

홍순민, 「『日省錄』의 편찬 과정과 구성 원리」, 『민족문화』 2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9.